

프랑스의 육아정책

| 정미라 · 조희연 · 안재진



*International
Trends and Issues in
Child Care and Education Policy*



KICCE

육아정책개발센터

프랑스의 육아정책

정미라 | 조희연 | 안재진

프랑스의 육아정책

| 정미라 · 조희연 · 안재진



*International
Trends and Issues in
Child Care and Education Policy*



발간사

최근 들어 많은 국가들이 육아지원정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주요 선진국들은 일찍이 인구 감소의 위기와 여성경제 활동의 보편화 추세에 대응하는 핵심 사회정책으로서 정교하고 실효성 있는 육아지원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함과 더불어 좀더 효과적인 육아지원정책 대안을 모색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미래 인적 자원의 육성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며, 인생 초기인 영유아기 성장과 발달에 대한 지원이 여타 시기의 지원보다 효과적일 뿐더러,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주요 선진국에서의 실증적 연구 결과들 때문에도 영유아기 육아지원을 위한 세부 정책들을 마련하고 또한 계속 발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육아정책개발센터에서 연속 간행될 세계의 육아정책 동향은 각 국가들에서 시행하고 있는 최근 육아정책의 주요 이슈와 동향을 소개하는 데 가장 큰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2006년도에는 일본과 스웨덴의 육아정책을 시작으로 2007년도에는 호주와 영국, 2008년도에는 미국과 캐나다 등 육아 선진국들의 육아지원정책 동향을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왔습니다. 금년에도 핀란드에 이어 프랑스의 육아지원정책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세계의 주요 국가들이 시행하고 있는 육아정책 정보들을 통하여 향후 우리나라 육아정책의 방향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세부 육아지원 정책을 개발하는 데 적극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CONTENTS

목차

1장

프랑스의 사회·문화적 특성

1. 개요 · 04
2. 인구 구성 및 사회적 특성 · 06
3. 여성 취업률 · 12
4. 육아지원제도 · 15

2장

프랑스 유아교육·보육의 형성과 배경

1. 프랑스 유아교육·보육의 시초: 오베를랭의 편물학교 · 21
2. 프랑스 유아교육·보육의 발전과정 · 24

3장

프랑스 유아교육·보육정책 제도 및 담당부서

1. 관련 법 및 제도 · 29
2. 주요 담당 부처 · 33
3. 최근 정책 동향 · 44

4장

프랑스 유아교육·보육 서비스 이용 실태

1. 서비스 유형과 이용 실태 · 49
2. 유아교육 및 보육 전문 인력 양성 · 62
3. 국가수준 프로그램 · 68

5장

프랑스 유아교육·보육의 행·재정 지원

1. 행정 주무기관 • 73
2. 행정 전달 체계 • 75
3. 예산 및 교육(보육)료 • 77

6장

프랑스 유아교육·보육 서비스의 질 관리 및 협력

1. 서비스 관리 기관 • 85
2. 영유아 교육과 보육, 유아교육과 초등교육의 협력 관계 • 88

7장

프랑스 유아교육·보육 정책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 • 93

참고문헌

• • 104

프랑스의 사회 · 문화적 특성

1. 개요

서 유럽에 위치하고 있는 프랑스는 육각형 모양의 국토로 그 면적이 우리나라 면적의 약 2.5 배에 달하는 547,030km²의 규모로, 유럽에서 세 번째로 큰 나라이다. 지역적으로 유럽대륙의 서부, 대서양과 지중해 사이에 위치한 프랑스는 예로부터 문화적 교류지대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본토 이외에 해외 프랑스령으로 마르티니크, 과들루프, 레위니옹, 프랑스령 기아나가 있고, 그밖에 6개의 해외공동체 (마요트, 생마르탱, 생바르텔레미, 생피에르미클롱, 윌리스 푸투나 제도,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1개의 특별 공동체 (뉴벨칼레도니), 1개의 해외영토 (프랑스령 남부와 남극지역), 중앙 정부 직할의 공유지인 무인도인 클리퍼턴 섬이 있다.

프랑스의 역사를 개관하면 987년 프랑크 왕국이 멸망하고, 카페 왕조가 창시되면서 최초의 국가가 형성되었다. 정치적으로는 절대왕정 체제와 제정, 공화정을 반복하다가 1871년 공화정부를 수립하여 오늘에 이른다. 행정구역으로는 22개 지방(région), 96개 도(département), 329개 구(군, arrondissement), 3,879개의 면(canton)과 36,568개의 동(리, commune)으로 나뉜다.

인종적인 면에서 프랑스 국민은 켈트족 계열의 골족(Gaul)으로 주변 국가의 게르만족, 라틴족과 융화하여 오늘날 프랑스인의 정체성을 형성하였다. 최근에도 프랑스는 EU권 내의 각 국가로부터 이주노동자들을 받아들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프랑스에는 알제리, 모로코, 튀니지 등의 북아프리카 지역과 세네갈, 기니 등의 서아프리카 지역, 베트남, 라오스 등의 옛 식민지 국가의 사람도 다수 거주한다. 외국 이주민으로는 알제리를 위시한 북아프리카 출신의 인구가 가장 많다. 따라서 종교도 이슬람교인(10%)이 카톨릭교인(88%)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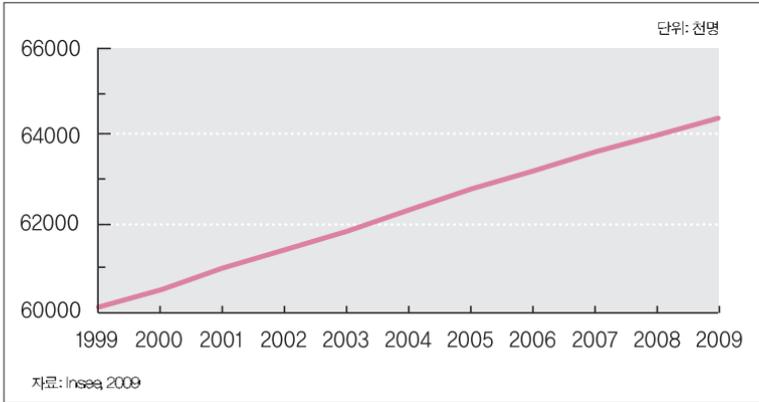
프랑스의 정치적 특징은 미국이나 영국과는 달리 그 헌법이 지속성, 영구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현재 프랑스 의회는 상원(Sénat)과 국민의회(Assemblée Nationale)로 구성된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다. 프랑스 의회는 연중상시개원제를 채택하고 있어 연중 국사를 논의할 수 있으며 법률안 발의 및 심의 의결권과 대정부 통제권의 권한을 갖는다. 최근에는 EU통합 영향으로 좌우파간의 대치는 온건우파 정당 대 사회당의 대결구도로 계속되고 있다. 2008년 7월 상·하 양원 합동 회의에서 기존의 대통령과 총리가 권력을 나눠가지는 이원 집정제에

서 대통령에게 권한을 몰아주는 대통령 중심제로의 개헌안을 통과시켰다. 권력의 중앙집권에 대한 거부감으로 권력을 분산시켰던 프랑스가 좌우동거정부를 거치면서 권력 분산이 야기되는 혼란을 종식시키고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할 수 있는 대통령 중심제로 권력구조를 바꾸는 개헌안을 도입했다.

국민총생산의 규모는 2007년 1조 7920억 유로로 세계5위이며, 1인당 국민 소득은 28,356유로, 경제성장률은 2%이다(DG'IPE, 2007).

2. 인구 구성 및 사회적 특성

프랑스 국립통계청(INSEE)의 보고에 따르면 프랑스 본토와 해외의 프랑스령의 전체 인구는 2009년 1월을 기준으로 64,303백만명(본토: 62,45백만명, 해외 프랑스령: 1,85백만명)으로 2008년에 비해 0.6%가 증가했다. 인구 규모로 볼 때 프랑스는 유럽연합국가 중 독일(82.1백만)을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유럽연합국가의 전체 인구의 13%에 해당하는 수치이다(Pla, 2009). [그림1.1]에서 프랑스의 인구는 1999년 이래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8년 한해 동안 834,000명이 태어났고 543,500명이 사망했으므로 290,500명이 증가한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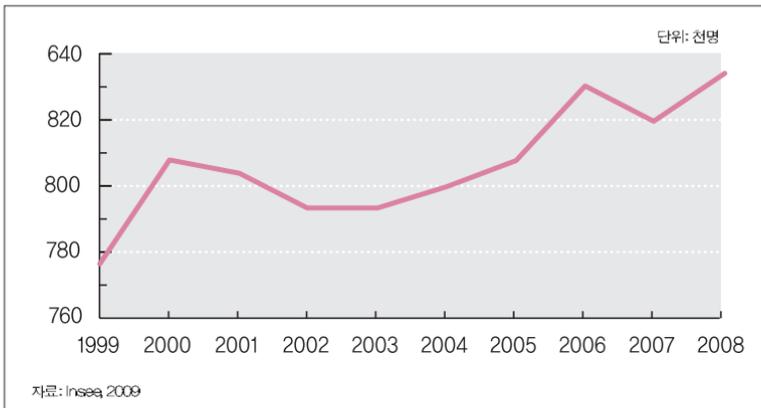


[그림 1.1] 프랑스 인구 변화

이러한 프랑스 인구의 증가는 출산율의 변화와도 연관되어 있다. 18세기 이래 프랑스는 세계에서는 물론 유럽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국가 중 하나였다. 프랑스는 2차 대전 이후 인구 증가율이 감소함에 따라 노동력의 부족, 연령의 고령화, 인구의 도시집중화 등 사회 문제를 겪었으나, 프랑스 정부의 적극적인 이동과 가족을 위한 다양한 사회복지 정책이 효과를 거두어 2000년대 이후 오히려 ‘미니 베이비붐’을 일으키고 있다. 그 결과, 지난 25년간 가임여성의 수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 1인당 평균 출산율은 2007년 1.98명에서 2008년 2.02명으로 증가했다¹⁾. 이러한 출산율은 프랑스에서도 1981년 이후 최고치이며, 유럽 국가들의 평균 출산율이 1.5명임을 감안할 때,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현재 프랑스는 유럽국가들 중 출산율 1위로 선진국들 중 드물게 이민자 증가보다 출산이 인구증가에서 더 큰 영향을 주는 나라이다. 이런 현상은 최근 프랑스가 여성의 초산

1) 2008년의 출산율을 미니베이비붐이라고 부른다.

연령 증가나 젊은 계층의 결혼 기피현상 등을 완화시키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적극적인 출산장려정책의 결과로 평가되고 있다. 물론 프랑스 사회도 여성의 첫째 아이 출산 평균연령이 점점 높아져 1998년 29.3세에서 2008년 30세로 바뀌었으며, 그 중 52%가 법적 결혼을 하지 않은 커플(Pacs) 사이에서의 출산이다. 결혼은 하지 않으나 동거하면서 자녀를 낳는 사람들의 수는 10년 전에 비해 10% 증가했다(Prioux, 2008). 결혼제도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의미에서 지난 1999년에는 사회연대협약(Pacs)이라는 제도를 도입해 동거 커플도 결혼에 준하는 각종 사회적 권리를 인정했다. 그 결과 이혼하고 혼자 아이를 키우는 편부모, 동거 커플 사이에서 태어난 혼외 자녀들도 프랑스 사회에서 제공되고 있는 갖가지 육아지원 관련 수당을 받는다.



[그림 1.2] 프랑스의 출산율 (1999년~2008년)

이와 같은 출산율의 꾸준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프랑스도 최근 노인층 인구의 비율이 점점 늘고 있어 인구 노령화 문제를 겪고 있다.

2009년 1월 인구조사 결과에 의하면, 국민 6명 중 1명이 퇴직자이며, 전체 인구의 8.7%가 75세 이상이고 16.5%가 65세를 넘었다(1999년의 경우는 각각 6.9%, 15.7%). 반대로 20세 미만의 인구는 1999년에 전체 인구의 25.9%였지만 2009년에는 24.8%로 감소했다. 그 결과 10년간 노동 참여 인구(20~64세)는 58.4%에서 58.7%로 0.3% 증가했다. 결국 프랑스 사회도 최근 출산율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평균 수명의 연장 등의 결과로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생산인구에 비해 복지혜택을 받는 인구의 비율이 높아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겪고 있다.

〈표1.1〉 최근 10년간 프랑스의 연령별 인구변화(1999-2009)

단위: 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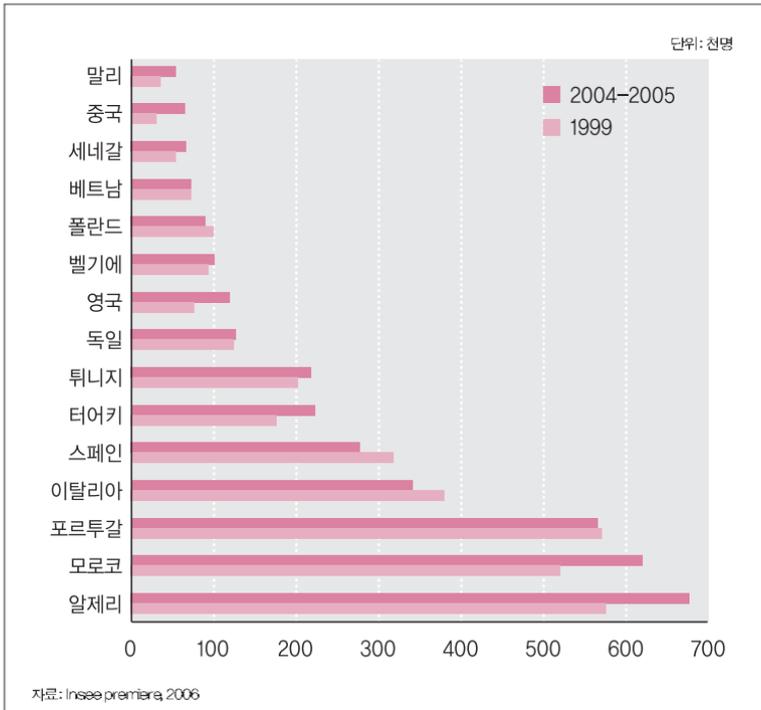
연도	1월 1일 기준 인구					비율(%)		
	20세 미만	20-59세	60-64세	65세 이상	75세 이상	20세 미만	20-64세	65세 이상
1999	15,594.8	32,314.8	2,792.0	9,421.1	4,177.8	25.9	58.4	15.7
2006	15,887.7	34,136.1	2,827.9	10,334.2	5,159.2	25.1	58.5	16.4
2007	15,902.1	34,164.9	3,120.3	10,391.2	5,307.5	25.0	58.7	16.3
2008	15,904.4	34,136.0	3,395.2	10,501.3	5,457.4	24.9	58.7	16.4
2009	15,916.5	34,110.9	3,644.9	10,631.2	5,573.4	24.8	58.7	16.5

자료: Insee 2009

프랑스는 미국만큼이나 다양한 인종으로 구성된 다문화 국가이다. 프랑스 국민 중 약 4분의 1은 부모 혹은 조부모 중 적어도 한 명이 외국인이다. 오늘날 프랑스에는 약 5백만 명의 이민자들이 있으며 그들 10명 중 4명은 수도권(Ile de France)에 거주한다(Simon, 2001). 프랑스 인구의 8.1%를 차지하는 이민자들은 대부분 일자리를 찾아 프랑스에 이주한 사람들로 프랑스의 옛 식민지인 알제리, 모로코 그리고

포르투갈, 이탈리아 출신들이다(그림1.3 참조). 과거에는 스페인과 이탈리아에서 프랑스로 온 이민자들이 많았으나 최근에는 북아프리카와 아시아계 이민자들의 수가 늘고 있다. 이민자들의 증가 경향을 본다면 1990년 이래 이민자의 수는 18% 증가했다. 결국 프랑스 사회의 인구 증가율이 7%에 이른 것은 이민자들의 덕분으로 볼 수 있다. 많은 수의 이민자들은 프랑스 국적을 취득하고 있으며, 2004년을 기준으로 총 이민자의 40%에 해당하는 2백만 명이 프랑스 국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Borrel, 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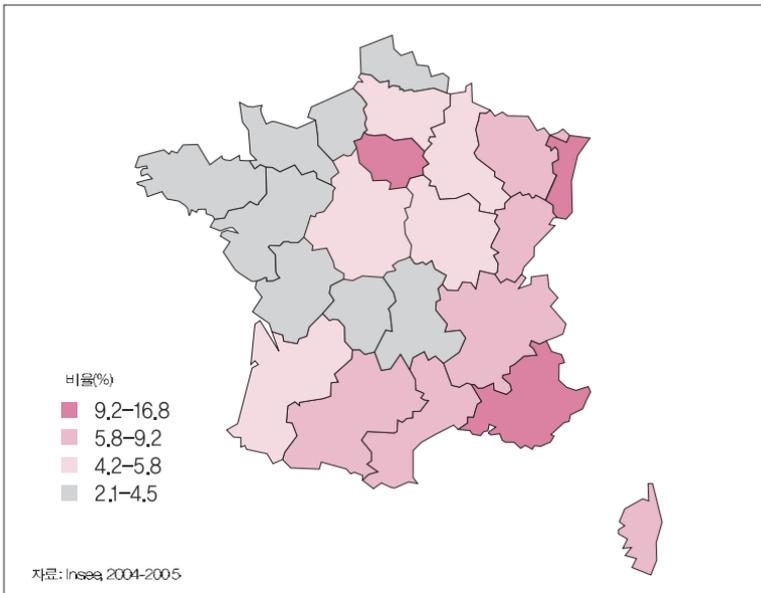
외국인이 프랑스 국적을 취득하고 프랑스 사회에 쉽게 적응할 수



[그림1.3] 프랑스의 이민자와 출신 국가

있도록 오래전부터 외국인 동화정책을 수립·시행해오긴 했지만 프랑스 사회에서 이민자들은 아직도 비숙련 노동에 종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프랑스의 옛식민지인 마그레브(알제리, 모로코, 튀니지) 출신 이민자들도 주로 비전문적이고 저임금 노동을 담당해 경기 침체기에는 대량 실업 상태에 놓였다. 또한 이들은 대부분 이슬람교도이므로 종교적인 면에서도 서구 사회와는 다른 가치관이나 생활방식을 가지고 있어 프랑스인들과 이민자들의 문화 차이가 문제가 되기도 한다.

외국 이민자들의 지역별 거주 분포는 인구 밀도가 높고 산업화된 지역인 수도권(Ile de France)과 지중해 연안, 론 알프스, 알자스와 북부지역에 집중되어 있다(그림 1.4 참조).



[그림 1.4] 2004-2005년 지역별 프랑스 이민자

3. 여성 취업률

프랑스 여성의 취업률은 다른 선진국과 비슷하게 매우 높은 편이다. 프랑스에서는 일찍이 여성의 사회참여가 이루어져 1970년대 초에 이미 25~59세 여성의 절반이 경제활동에 참여했다. 오늘날에도 여성의 취업률은 매우 높은 편이다. 거의가 맞벌이 부부이며, 독신 여성 역시 대개 직업을 가지고 있어 여성 4명 중 3명은 취업하고 있다. 이렇게 여성의 취업률이 높으나 다른 한편으로 여성들의 실직율이나 시간제 근로자의 비율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Asfa Essfi & Buffeteau, 2006). 국가 통계자료(Insee, 2008)에 의하면 2007년을 기준으로 전체 프랑스 여성의 65.3%가 노동 활동을 하고 있으며 25~49세 사이의 여성 중 82.9%가 직업을 가지고 있다. <표1.2>에서 연도별 변화를 보면 1975년에 비해 15~24세 여성의 취업률은 점차 줄어드는 반면 대학 졸업 이후 결혼과 자녀양육기인 25~49세 여성의 취업률은 점차 상승하고 있다. 이는 여성의 교육수준의 증가 등으로 취업 연령이 과거에 비해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육아에 대한 사회적 지원의 증가 등으로 결혼과 육아로 인해 사회활동을 중단하는 여성의 비율은 점차 감소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표1.2〉 성별 나이별 경제활동인구 비율

단위: %

성별	1975	1985	1995	2005	2006	2007
여성						
15-24세	50,1	44,3	31,1	30,7	30,7	31,8
25-49세	59,9	72,1	79,6	81,9	82,3	82,9
50-64세	42,9	39,8	43,9	55,0	54,9	55,2
전체(15-64세)	53,3	57,4	61,6	64,7	64,8	65,3
남성						
15-24세	60,6	53,0	37,4	38,0	38,0	38,0
25-49세	97,3	96,9	95,7	94,7	94,8	94,9
50-64세	79,5	64,5	58,6	63,7	62,7	62,2
전체(15-64세)	83,9	78,6	75,1	75,0	74,8	74,6

자료: Insee, 2008

일반적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증가할수록 기회비용의 증가로 인해 출산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러한 원칙이 프랑스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출산율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25-49세의 여성의 취업률은 계속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성들이 일과 가정생활을 양립할 수 있도록 프랑스 사회가 사회적인 양육지원 체계를 제공해 줌으로써 모성과 사회적 활동을 함께 병행할 수 있게 지원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표1.3〉에서 볼 수 있듯이 취업여성의 4분의 1은 시간제로 일하고 있다(Arnault, 2005). 두 자녀를 두고 있거나 자녀 중 3세 미만이 최소 1명 이상인 여성의 종일제 취업률이 다른 집단에 비해 낮으며, 이러한 비율은 자녀의 수가 증가할수록 현저히 낮아진다. 대신 시간제 근로에 종사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그러나 프랑스에서는 시간제 노동을 국가 정책적인 차원에서 일과 가정생활 양립을 위한 방안으로 강조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시간제 노동은 근본적으로 각 개인의 경제적인 안정을 보장하

지 못할 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에서의 성별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노동계와 페미니스트로부터 심한 반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표1.3) 세대유형과 자녀수에 따른 취업률과 실업률 (2005)

단위: %

구분	취업률		종일제 근무		시간제 근무		실직률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양부모	75.7	91.4	46.3	82.8	22.8	3.3	6.6	5.3
자녀 없음	74.4	84.2	51.4	74.2	16.5	4.3	6.5	5.7
1자녀, 3세 미만	80.2	96.5	54.1	86.6	16.1	2.7	10.0	7.1
2자녀, 3세미만최소1명	59.8	96.3	29.9	86.7	25.6	3.8	4.4	5.9
3자녀, 3세미만최소1명	37.1	96.4	15.9	84.7	17.0	2.7	4.2	8.9
1자녀, 3세 이상	81.1	91.2	51.5	83.4	23.1	3.3	6.4	4.6
2자녀, 3세 이상	83.9	95.9	47.9	89.8	29.7	2.1	6.2	3.9
3자녀, 3세 이상	68.2	94.8	30.6	85.1	29.3	3.7	8.3	6.0
편부모	79.5	82.8	53.9	67.5	15.0	5.1	10.6	10.1
자녀 없음	77.6	82.4	55.6	66.9	13.4	5.2	8.6	10.3
1자녀 이상	82.1	86.3	51.6	74.7	17.1	4.0	13.3	7.6
전체	76.5	89.8	47.9	79.9	21.1	3.7	7.5	6.2

자료: INSEE, enquetesemploi, 2006

한편 여성 취업률은 가족의 형태에 따라서도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3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편모 가정의 경우 동일한 경우의 양부모 가정보다 노동 참여율이 낮다. 그러나 자녀가 3세 이상이 되면 편모 가정의 여성취업률이 양부모 가정보다 더 높아진다. 이것은 가족의 생활 경비를 여성이 조달해야하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학력이 낮은 여성들이 학력이 높은 여성들보다 노동 시장 참여율이 낮다(Insee, 2006).

4. 육아지원제도

프랑스 육아정책의 방향은 육아지원기관의 질적 수준 향상과 양적 확충 간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고, 부모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여 영유아 및 부모를 적절히 지원하는 것이다. 육아비용에 대한 국가와 개인의 책임은 국가가 교육 및 보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부모는 부가서비스에 대해서만 개인 소득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담한다. 프랑스의 육아지원정책은 자녀를 임신한 시점부터 시작된다. 프랑스 노동법은 임신부에 대해 출산 전 6주, 출산 후 10주의 유급 출산·육아 휴가를 보장하고 있다. 무급휴직은 최장 3년까지 가능하며, 출산·육아 수당도 있다. 아이 한 명에 889.72유로를 출산수당으로 지급하며, 아이가 세 살이 될 때까지 부모의 급여에 따라 월 177.95유로 정도의 육아수당이 지급된다. 부모가 출산으로 인해 휴직하면 국가가 월 552.11유로를 보조한다(Caf, 2009).

프랑스는 아이를 낳게 될 여성에게 출산 예정일 6주 전에서 출산 후 10주 사이에 최소한 16주의 휴가를 가질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부여하고 있다²⁾. 그러나 3번째 자녀부터는 <표 1.4>에서 볼 수 있듯이 그 기간이 출산 전 8주간 그리고 출산 후 18주간으로 연장된다. 산모는 의무적으로 최소한 8주 동안(그 중 6주는 출산 후) 일을 중단하고 쉬어야 할 의무가 있다. 마찬가지로 쌍둥이를 출산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최소 두 배로 길어져 출산 전 12주, 출산 후 22주로 연장된다. 이 휴가기간 동안의 급여에 해당하는 보상금은 사회보장기구

2) Code de la sécurité sociale, livre III, L.330-1 et suivants

(Sécurité Sociale)가 지급한다.

또한 산모는 임신기간 동안과 출산 이후 의무적인 건강진단을 위해 직장에서 휴가를 받을 권리가 보장되어 있다. 출산 중 아이가 사망하는 경우에도 산모는 출산 후 휴가를 가질 수 있다. 그리고 출산 과정에서 산모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산모 대신 아이의 아버지가 출산 후 휴가를 얻을 수 있다. 2002년부터 남성들도 임금근로자일 경우 부인과 함께 출산휴가를 신청할 수 있다. 1명의 아이가 태어난 경우에는 출생일부터 11일간, 쌍둥이 혹은 그 이상의 아이들이 태어난 경우에는 18일간 연속해서 휴가를 낼 수 있으며, 이는 자녀 출생 시에 주어지는 3일간의 휴가와 겹쳐 누적될 수 있다. 이 기간 동안의 급여에 해당하는 보상금은 사회보장기구(Sécurité Sociale)에서 지급한다.

〈표 1.4〉 자녀수에 따른 휴가기간

단위: %

태어날 자녀 수	기존 자녀 수	출산전 휴가기간	출산후 휴가기간	전체 육아휴가기간
1	0-1	6주	10주	16주
	2이상	8주	18주	16주
쌍둥이	-	12주	22주	34주
세쌍둥이이상	-	24주	22주	46주

자료: Caf, 2009

임금근로자 여성이 출산휴가 이후에도 육아를 위해 추가적으로 휴직을 원할 경우에는 출산휴가 이후부터 아이가 3번째 생일을 맞이하는 날까지 육아휴직을 할 수 있다. 고용주는 부모가 된 직원의 선택에 따라 육아휴직 혹은 시간제 근무를 허가해야 한다. 이런 경우, 휴

직기간에 해당되는 근로계약 및 급여는 일시 중단되지만 고용계약이 파기되는 것은 아니다. 정규직원이 시간제 근무를 위해 전환하는 경우, 고용계약은 이에 맞추어 수정되고 임금도 시간제 근로 규정에 따라 책정된다. 육아휴직이 끝나는 시점에 근로자는 자신의 원래 직무로 복귀하든지 아니면 그와 유사한 일에 종사할 수 있도록 보장된다.

프랑스는 GDP의 3.5% 이상을 가족정책에 지출함으로써 OECD 국가 중에서 가족정책에 대한 지출이 가장 높은 국가로 손꼽힌다. 전체 가족지원정책 재원의 약 $\frac{2}{3}$ 는 기업의 사회적 기여금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frac{1}{3}$ 은 지방자치단체의 조세로 충당하고 있다. 육아비용 지원을 통한 가족지원정책을 살펴보면, 가족수당(AF), 부가적 가족수당(CF), 영아육아수당(APJE), 가정보육모 고용 지원수당(AFEAMA), 자택 내 육아수당(AGED) 등이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족수당**: 두 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에 지급되는 수당으로 자녀 수와 자녀 연령에 따라 차별적으로 지급되며 정부재원의 28%를 차지함.
- **영아육아수당**: 부모의 소득이 일정수준을 넘지 않을 경우 영아를 둔(혹은 임신상태인) 가정에 지급되는 수당이다. 첫째 아이의 경우 임신 4개월에서 생후 3개월까지 지급되며, 둘째 아이부터는 생후 3개월에서 만 3세까지 지급함.
- **부가적 가족수당**: 자녀의 연령이 영아육아수당을 받을 수 있는 나이를 지났을 경우 지급되는 수당으로 부모의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지 않아야 함.
- **가정 보육모 고용 지원수당**: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가정에서 자

격을 갖춘 가정 보육모를 고용할 경우 가계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사회보장기금을 비롯한 각종 사회복지기금의 분담금을 보조해주는 것이며, 일정 금액의 현금을 가정에 지급해주는 것도 포함됨.

- **자택 내 육아수당:**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직장인 부모가 자신의 집에 보육모를 고용하여 자녀를 돌보게 하였을 경우 지급되는 수당.

그 외, 육아비용에 대한 대표적인 국가의 지원제도는 부모가 직업을 그만 두었을 경우 만 3세 이하 자녀 모두에게 적용되는 취업자유선택보조수당, 초등학교 입학에 대해 유아에게 지급되는 개학준비수당, 입양수당, 장애정도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장애아동교육수당, 부모 중 한 쪽만 생존한 경우에 지급되는 편부모수당, 자녀수를 고려한 소득공제제도, 영유아보육비의 25%, 가정보육 비용의 50%까지 환급해주는 세금환급 제도 등이 있다.

최근 OECD보고에 의하면, 프랑스 정부는 GDP의 0.7%를 취학 전 영유아 보육과 교육에 투입하고 있으며, 그 중 0.65%는 공립에, 0.03%는 사립에 지원하고 있다(OECD, 2006). 프랑스의 육아지원기관은 3~5세가 다니는 유아학교(école maternelle) 이외에 3개월~3세를 위한 보육시설인 크레쉬(crèche collective), 부모협동보육(crèche parentale), 가정보육(assistante maternelle), 일시보육시설(halte-garderie) 등이 있으며 여기에 투입되는 총비용은 GDP 대비 0.5%에 이른다. 0~3세아 자녀를 둔 부모는 유아교육 또는 보육에 소요되는 총 비용의 27%정도를 부담하게 되고, 유아학교에 다니는 3~5세의

모든 유아들은 국가가 책임지는 무상교육 서비스를 제공 받는다. 시설 이용 현황을 보면, 2002년 기준 만 3세 이상 유아의 유치원 취원율은 거의 100%이다. 3개월 이상 2세 이하 유아의 약 36% 정도가 부모 이외의 사람으로부터 보육서비스를 받고 있다(MEN, 2009).

프랑스 유아교육 · 보육의 형성과 배경

프랑스의 유아교육 · 보육제도는 보편성과 공
—보육, 공교육 체제를 지향한다. 프랑스에서
의 무상 의무교육은 만 6세부터 16세까지 11년 동안
제공되며, 유아교육은 무상으로 제공되나 의무는 아
니다. 프랑스 교육에서 중요시하는 점은 자유 · 평
등 · 박애의 프랑스대혁명 정신을 계승하여 교육 현
장에서도 학습자의 개인차를 존중하고 사회 계층이
나 경제적 능력의 차이에 상관없이 원하는 모든 사람
들에게 고등교육의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다. 그러나
처음부터 프랑스의 유아교육 · 보육 제도가 보편적
제도로서 출발한 것은 아니다. 프랑스의 유아교육 ·
보육 제도는 초기에는 교회를 중심으로 가난한 계층
의 일하는 엄마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선별적 자선

기관으로서 시작되었으며 이후 역사적 변천과정을 거쳐 모든 유아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는 보편적인 학교 제도로서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본 장에서는 프랑스의 유아교육·보육 제도의 형성과정을 살펴보겠다.

프랑스의 유아교육·보육의 발전과정을 크게 나누어보면 빈민구제라는 사회적 필요에 의해 최초의 보육시설과 유아교육 기관이 설립된 시기인 18세기 후~19세기 초와 유아교육과 보육이 공교육·공보육체제로 자리매김하기 시작한 19세기 후반으로 나누어진다. 이후 유아교육·보육은 19세기와 20세기 초까지 주로 위생적이며 의학적인 기능을 강조하다가, 1960년대에 이르러 심리학, 정신분석학, 임상심리학의 발달로 아동 내면의 심리적 안정을 더욱 중시하게 되었다. 프랑스에서는 유아교육 및 보육시설은 물론 각종 육아지원정책을 통해 영유아의 타고난 능력과 잠재성을 최대한 계발할 수 있도록 국가·지역·각 지방행정당국에서 지원하고 있다(조정신·황성원, 1998).

1. 프랑스 유아교육·보육의 시초: 오베를랭의 편물학교

프랑스의 경우, 보육제도의 출발은 중세 시골에서 올라온 유모가 도시 아이들을 돌보는 일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12세기부터

종교/자선 단체들이 이러한 유모들을 조직화하고 14세기에는 유모들에 대한 임금 체계가 성립되는 등 유모들을 제도화하는 과정이 결과적으로 현재의 가정보육제도 등으로 발전하게 되었다(양옥승 외, 1998). 프랑스에서 현대적인 의미의 보육시설이 처음으로 등장한 것은 산업혁명시기인 18세기 후반이며 편물학교라는 이름으로 오베랭(Oberlin)에 의해 설립되었다. 이 학교는 부모가 일하는 동안 아동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했다(Mozère, 1992). 1770년 설립된 편물학교의 의의는 한편으로는 무지하고 일에 얽매어 자녀교육의 역할을 거의 담당할 수 없었던 부모를 대신하여 자녀를 보육하는 것이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가정 밖에서 직업에 종사하는 여성 근로자들에 의해 야기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한 것이었다. 또한 편물학교는 여성근로자들을 대신하여 자녀를 보호하는 역할 뿐 아니라, 그 이름이 시사하듯 유아에게 편물, 바느질하기, 실 감기 등의 다양한 수기 활동을 강조하였다. 이외에도 편물 학교에서는 유아에게 종교 교육, 올바른 습관형성, 쓰기, 정확한 발음, 자연 교육 등을 실시함으로써 장래의 훌륭한 기독교인의 양성이나 미래 산업현장에서 유용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시민 양성을 목적으로 하였다(정미라, 1999).

19세기 초반에는 유아교육 기관이 빈민 구제 사업의 일환으로 설립·운영되면서 프랑스 전국으로 확산 되었는데, 1801년 6개월 이상 된 영유아를 보호하기 위한 ‘아동위탁소’(Chambre de dépôt)가 설립되고 1825년에는 영국에서 오웬(Owen)이 설립한 유아학교(infant school)의 영향으로 생후 16개월-6세에 이르는 빈곤계층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아동 보호소’(Salle d’asile)가 설립되었으며, 이후 20세기

중반 현대적 유치원인 유아학교(école maternelles)로 발전하기에 이른다(Dajes, 1983). 아동보호소는 1830년에는 만 2~6세아들을 위한 무상교육과 전일제 수업(8~19세)을 실시하는 공공교육기관으로서 자리를 잡게 되었는데, 당시 이곳의 교육목표는 '정직하고(honnête), 고상하며(décente), 기독교적인(chrétienne) 정신을 가진 사람으로 기르는 것'이며 이를 위해 상호존중 및 배려를 중시하였다(이화도, 2006). 이후 아동보호소의 수는 급격히 증가하여 1836년에 93개, 1840년에는 555개, 1843년에는 1489개소에 이르게 된다(Dajes, 1994).

프랑스의 초기 보육시설인 크레쉬(crièche)는 1844년 파리에 최초로 설립되었으며, 1848년 이전에 약 20개의 보육시설이 파리에 설립되었고, 1862년 자선단체가 크레쉬를 운영할 수 있는 법을 제정하기에 이른다. 크레쉬는 무엇보다도 엄마들을 대신하기 위한 가족복지사업으로 가정의 소득을 공동으로 출자하여 일정금액을 모으기 위해 시민들에게 도움을 청하려는 사람들의 조합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조정신·황성원, 1998). 그러나 1875년까지 지속되던 보육시설의 증가는 점차 쇠퇴하면서 사회 각계각층의 비판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주요 비판은 보육시설이 아동과 가족 간의 연결고리를 약화시키고 엄마의 역할과 의무를 약화시키며, 특히 영아에게 모유를 먹이는 의무를 저버린다는 점이었다(정미라, 1999).

2. 프랑스 유아교육 · 보육의 발전과정

영유아의 건강과 위생을 강조하는 복지적인 성격을 보였던 초기 보육시설들은 1881년에 공보육 체계로 통합되면서 공식적으로 공공 보육시설 운영이 시작되었다(송승민, 2006). 또한 유아교육의 무상교육, 중립교육, 공교육의 체제는 르네상스시대로 접어들어 학교와 교육이 카톨릭 교회의 지배에 있었던 중세의 전통으로부터 벗어나 교학(敎學)이 분리되고 교육의 국가 관리가 이루어진 19세기 이래 확립되었다(정미라, 1998).

1848년부터 아동보호소(Salle d'asile)라는 명칭을 유아학교(école maternelles)라는 이름으로 바꾸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그러한 노력은 1881년의 법령을 통해 그 실효를 거두게 되었다. 결국 아동보호소가 유아학교로 전환되면서, 그 성격도 노동자 계층 자녀의 신체적 보호와 양육 중심에서, 발달에 기초한 교육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었으며, 1881년 법령(La loi du 16 juin, 1881)을 통해 유아학교가 “의무교육은 아니지만 무상이며 중립성을 띠는 학교”임을 밝히면서 유아교육은 공교육 체제를 갖추게 된다. 이때부터 2~6세 아동들을 위한 유아학교는 교육부로부터 교육체제 구성 및 재정지원을 받게 된다. 더 나아가 1886년에 이르러, 유아학교는 초등학교와 함께 기초 학습단계로 프랑스 교육의 기본학제 속에 포함되어지면서 독립된 교육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된다(이화도, 2006).

20세기 이후 나타난 인구의 도시 집중화, 가족구조의 변화 등의 사회현상으로 인해 보육시설 및 유아교육 기관에 대한 새로운 요구가 증가하였다. 이미 20세기 초에 프랑스는 인구를 국가경쟁력의 중요

지원으로 인식하여 출산장려주의 정책을 펼쳤으며, 아동의 양육과 교육에 대한 국가의 직접적 개입이 이루어져 왔다(홍승아, 2005). 즉, 아동은 개인으로서 뿐만 아니라, 국가나 사회 전체의 발전을 위한 ‘미래의 원동력’으로서 그 가치를 평가받게 되었으며, 국가나 사회도 아동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따라서 그동안 가정에서 담당하였던 자녀양육 및 교육 기능을 상당부분 외부 기관으로 이양하게 되었으며, 사회적 신분 상승 또는 유지를 위해 학교 및 교육이 담당하는 중요성을 재인식함에 따라 가정 뿐 아니라 유아학교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게 되었다(정미라, 1999).

그러나 20세기에 들어 중·상류층 아이들을 위한 사립유치원³⁾(Jardin d'enfants)이나 사립고등학교 부설 유아학급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유아학교는 주로 노동자 자녀들을 위한 교육기관으로 인식되어, 보편성을 지닌 교육기관으로서 유아교육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국가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모든 아이들에게 주어진 권리로서의 보편적 교육기관의 역할을 하지 못하였다(이화도, 2006). 파리시내의 보육시설 상황도 마찬가지로 열악하였는데, 세계 경제공황 시기부터 시 보조금이 줄어들어 운영이 큰 어려움에 봉착하였고, 산업화에 따라 공장지대가 도시 외곽으로 나가면서 오히려 보육시설은 점점 부모들의 일터에서 멀어졌으며, 그 결과 외국 이민자들의 자녀를 받아들이는 수용소로 전락하기도 하였다(Mozère, 1992).

그러나 2차 대전이후 모자보건국(Protection Maternelle et Infantile: PMI)이 1945년 새로 설립됨에 따라, 탁아와 보호 기능의 보육시설은

3) 사립유치원(Jardin d'enfants)은 프리벨이 명명한 유치원(kindergarten)을 번역한 용어로 사용하며, 주로 사립기관이다.

본래의 자선적인 취지에서 벗어나 의학과 병행하여 다루어지기 시작했다. 적은 수입으로 누추한 거주지에 사는 자와 직업이 반드시 필요한 여성의 아이들이 당시의 보육대상이었으며, 그 아이들에게 신체적인 건강을 보장하는 것이 보육시설의 주요 목적이었다. 이제 아동은 제 나이에 맞는 위생적인 보살핌을 받게 되었으며, 크레쉬는 공공 건강을 지키는 사회적 임무에 참가하여 영아 사망률을 낮추고 전체 인구의 보건위생과 사회적 보호시설을 개선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였다. 한편, 이 시기에는 일하는 부모를 대신하여 보육시설에서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전무했는데, 보육시설의 우선적 기능이 바로 의학과 보건위생에 관련해서만 접근되었기 때문이다. 보육시설은 외부 출입자를 엄격히 규제했으며, 부모들은 현관이 나 우유 먹이는 방 이외의 시설 내부를 돌아다닐 권리가 없었고, 단지 원장하고만 대화할 수 있었다(조정신·황성원, 1998).

1960년대 들어, 아동발달에 관한 많은 심리학적 이론들이 등장하면서, 보육시설과 유아학교의 역할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진다. 인간 발달에서 유아기의 중요성을 입증하는 많은 발달심리학과 교육학 분야의 연구가 사회 전반에 보급되면서 점차 유아는 신체적 또는 생리적 보호와 애정을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그가 속한 사회문화적 환경 속에서 다양한 요소에 의한 영향으로 성장해 나가는 존재로 보게 되었다. 루소나 몬테소리, 페스탈로찌등 뿐만 아니라 드크로리(Decroly, O), 프레네(Freinet, C), 피아제(Piaget, J), 월롱(Wallon, H) 등과 같은 교육학, 심리학 분야의 많은 이론들은 유아기의 중요성 뿐 아니라 유아기 학습과정의 독특성을 강조하였고, 유아의 실제 활동

과 놀이의 가치를 재평가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학습자 자신이 주체가 되는 '학습하는 방법을 배우는 교육'을 강조하게 되었다(정미라, 1992). 이에 유아를 위한 교육은 과거의 백과사전식 교육이나 초등학교 학습의 준비에서 탈피하여 유아의 호기심이나 관찰력을 중시하게 되었고, 유아의 사회화를 위한 유아교육 기관의 중요성을 강조하게 되었다. 이러한 유아학교의 역할에 대한 재평가와 함께 도시의 중산층 이상 아이들의 취학률이 증가하게 되면서, 유아학교는 미래의 시민을 양성하는 보편적 교육기관으로서 위상을 갖기 시작한다(이화도, 2006). 이러한 심리학자들의 출현은 위생 상태에 대한 절박함이 더 이상 없는 상황에서 보육의 주된 분야를 상호 개인적인 관계로 옮겨 놓았으며 결국 예전의 보육시설에서 보았던 부모의 참여를 금하던 사례는 없어지고 보육시간은 융통성을 갖게 되었다. 즉, 보육시설이 위생기능보다 교육과 심리적 기능에 눈을 뜨면서 그 정체성이 새롭게 부각되었던 것이다(조정신·황성원, 1998).

1968년 5월 학생시민 운동에서 강조된 여성해방에 대한 사상과 당시 취업모의 사회진출 증가 현상은 보육정책이나 제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즉 가사와 육아를 부모 개인적인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사회가 함께 분담해야 한다는 공공보육의 필요성에 대한 주장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유아의 보호와 교육의 책임을 개별 가족 뿐 아니라 사회가 공유하게 되면서, 보육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하게 되었다. 이러한 정부의 적극적인 보육지원정책은 1980년대 경제위기와 복지국가 재편 과정이 본격적으로 실시되기 이전까지 주로 공공 보육서비스를 중심으로 보편적 서비스의 제공을 목표로 추진되었으나, 1980

년대 이후부터는 보육서비스에 대한 개별지원과 개별화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 변화가 나타난다(홍승아, 2005).

1994년 이후에는 신자유주의 경제원리가 도입된 보육정책을 공공 보육정책에 도입해서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영유아 교육기관으로서의 유아원과 유치원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한편, 보육서비스의 유연화와 개별화 정책을 통해 부모가 근무시간을 신축적으로 조절할 수 있게 해주고, 직접 양육할 경우 양육수당, 가정 내 보육수당, 등록보육사 고용지원, 세제 혜택 등을 주고 있다. 또한 가정개별보육을 양화, 발달시키고 보육의 비용분담방향으로 정책방향이 이전되고 있다(홍승아, 2005).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오늘날 프랑스에서 실시되고 있는 보육제도는 초기의 빈민층을 구제하기 위한 단순한 자선사업의 성격을 벗어나 직장을 가진 부모들이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을 조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원체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한편 유아교육 제도는 제도화된 보편적 접근권을 제공함으로써, 만 3~5세 아동 대부분이 혜택을 받게 되었는데, 1989년에는 법령(La loi d'orientation dur l'education, 1989)에 의해 “부모가 원한다면 집에서 가장 가까운 학교나 유아학급에 모든 3세아들이 다닐 수 있는 것은 그들의 권리임”을 밝힘으로써 유아학교는 아동의 권리 차원에서 모든 아이들을 위한 보편적 교육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게 된다(이화도, 2006). 이러한 유아공교육 체계는 현재까지 지속되어 만 3~5세 유아들을 대상으로 한 유아학교의 경우 거의 100%에 가까운 유아들이 공립학교를 통해 무상교육의 혜택을 받고 있다.

프랑스 유아교육·보육 정책 제도 및 담당부서

1. 관련 법 및 제도

프랑스는 유아교육 체제가 제도적으로 잘 정립되어 있는 나라이며 유아교사들에 대한 양성교육이 체계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이다. 프랑스의 유아학교 교육은 프랑스 혁명기부터 유래한 공교육에 대한 열망에 따라 1882년 초등교육의 의무화와 연계되어 유아 무상교육이 실현되었다. 프랑스의 유아교육은 의무교육은 아니지만 공교육의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다.

현재 프랑스의 유아교육 및 보육 체제는 연령에 따라 이원화 되어있으며 각각 다른 정부 부처로부터 관리와 재정지원을 받는다. 만 3세 이하의 경우 사회 및 가정복지부가 관리하며 신체, 정서적인 보호가 주 고려 대상이 되며, 학습보다는 학습을 위한 소양을 기르

고 감각을 길러주는 것(objectif d'éveil)이 목적이다. 반면에 교육부가 담당하는 만 3세 이상의 교육은 놀이를 통한 유아교육의 특성을 기본으로 하되 학습을 위한 기본적인 소양을 기르고 준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것은 2008년 6월 교육부의 공식문서(B.O. Hors-série N° 3 du 19 juin 2008)에도 잘 나타나 있다. 학습의 내용은 유아들을 점진적으로 자율적으로 행동할 수 있게 하기, 능숙하게 말하고 쓰기 위한 기본 능력을 탐색하도록 하되, 유아의 개인적 발달 속도와 요구를 존중해야 함을 강조한다. 또한 유아학교 교육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는 초등학교 학습 준비이며, 이는 특히 유아학교의 마지막 단계인 만 5세 유아를 위한 주요 교육 목적이다.

또한 프랑스는 유아학교 교육과정에서 전인발달 특히 문화교양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1998년 7월 9일 제정된 법령에 따르면 유아들이 다양한 문화적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예체능 활동을 강화하였다. 프랑스 유아교육의 교육목표와 그 역할은 <표3.1>과 같이 시대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교육에 대한 기회 균등을 토대로 하는 공교육 체제를 확립하고 있다.

〈표3.1〉 프랑스 유아교육관련 법령의 시대적 변천

법령	주요내용
1833년	- 탁아소의 주요 목적을 교육에 두고 초등교육의 첫 단계로 간주함. 이런 이유로 '작은 학교 또는 유아학교'로 명명할 수 있다고 밝힘.
1836년	- 영유아 보육을 담당하는 탁아소(2-6 또는 7세)는 빈곤층이나 부모가 모두 직장에 다녀 가정에서 돌봐줄 사람이 없는 유아들을 우선으로함. - 도덕성 교육을 규칙적으로 시킬 것을 강조함.
1848년	- 유아학교는 자신의 성격을 넘어 모든 유아를 위한 교육기관으로 명시하며 교육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제기함.
1881년	- 유아학교를 초기 교육기관으로 인식. 의무교육은 아니지만 무상이며 종교적으로 중립적인 학교라 밝힘.
1882년	- 유아학교를 정규학교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초등학교 이전에 유아의 학습능력을 길러주는 중간과정으로 간주함.
1886년	- 유아학교를 초등교육의 첫 단계로 인정함. - 기본 학제 속에 포함시킴으로써 독립교육기관으로서의 정체성 확립 - 의무교육은 아니며 2000명 이상 거주하는 모든 지역에 유아학교 설립함.
1889년	- 부모의 선택 하에 모든 만 3세 유아에게 유아학교에 다닐 수 있는 선택권 부여
1908년	- 유아학교를 위생적이고 보호기능을 가진 학교이면서 동시에 위험한 상황이나 의로움으로부터 유아들을 보호하는 은신처로 정의
1945년	- 유아학교는 형식적인 교육프로그램이 없는 교육기관이면서 강제적 구속이 없는 행복한 학교로 정의
1975년	- 유아교사의 특수성 강조: 모성애가 있어야 하고, 관찰자의 역할을 하며 아동 발달 단계에 대한 교육적 심리학적 지식을 갖춘 사람이어야 함
1977년	- 유아학교의 교육목표 명시: 초등학교 준비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유아들의 보호기관으로서의 기능을 강조
1980년	- 유아학교의 교육과정 중 신체활동의 중요성을 강조 : 유아교육과정에서 체육교육의 개념 탄생

1986년	- 유아학교와 보육의 기능만 담당하는 크레쉬(보육시설)를 구분하고 초등학교 교육을 위한 준비역할 외에 독자적인 기능과 역할이 있음을 밝힘 - 유아들 스스로 각자의 능력에 따라 새로운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유아학교 교육의 목표라 밝힘
1989년	- 유아학교를 기초학습능력을 준비하는 교육기관으로서 교육기능 강조 - 프랑스 교육학제의 주기체제가 시작됨에 따라 유아학교의 큰 반(GS)과 초등학교의 1(CP), 2학년(CE 1) 과정을 같은 학습주기(cycle)로 구성 - 유아학교 대상 연령의 하향화에 따라 만 2세아의 조기취학을 교육투자우선지역(ZEP)에서부터 점차적으로 시행
1995년	- 유아학교의 교육목표를 자세히 제시함 : 유아들에 적합한 생활방식 제공, 사회성 개발, 유아들의 지적, 감성적 능력 발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유도
1998년	- 유아학교의 정규수업외에 수업전, 후, 방과 후에 예체능 활동을 강화
2000년	- 유아학교와 마찬가지로 보육기관에서도 기본 교육목표와 기관별 교육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2002년	- 유아교육과정의 변화: 최고 교육목표를 언어교육(말하기, 듣기)으로 강조함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외국어 교육을 추가 - 예술교육육성 정책 발표: 교육투자우선 지역에 우선권을 둠
2008년	- 초등학교 학습을 준비하는 기관으로 유아들의 자율성과 언어교육 특히 각자의 발달 속도와 리듬에 맞춘 교육을 강조

가. 보육제도

2000년 법령(décret n°2000-762)에 의하면 보육기관은 공립과 사립으로 나뉘며, 보육유형에 따라 집단보육(accueil collectif)과 가정보육(accueil familial)으로 나뉜다. 집단보육기관으로는 집단보육시설(crèche collective), 부모협동 보육시설(crèche parentale), 시간제 보육시설(haltes-garderies)이 있고, 가정보육의 형태인 가정보육시설(crèches familiales)이 있다. 그 외에 혼합형 보육시설(multi-accueil)이 있는데 집단보육과 가정보육을 겸하거나 정규보육(종일제)과 시간제 보육을 병행하는 시설이다.

나. 유아교육제도

프랑스의 유아교육은 교육비를 국가가 부담하지만 의무교육은 아니다. 프랑스 혁명의 3대 이념(자유, 평등, 박애) 중 평등사상은 프랑스 교육에서 매우 강조되고 있는 부분이다. 프랑스 교육법전(제 L.111-1조)에는 국가가 교육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재정적인 지원을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유아교육에 있어서 모두가 일정 수준의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히고 있다. 프랑스의 유아교육은 프랑스에 거주하는 모든 만 3세부터 5세까지의 유아들에게 3년간 제공됨으로써 OECD국가 중에서 가장 교육기간이 길며 취학률도 가장 높다.

2. 주요 담당 부처

프랑스의 6세 이하 영유아 교육 및 보육 서비스 행정체계는 연령별로 이원화 되어있다. 3세 미만의 영아들을 위한 보육기관인 크레쉬(creche)의 경우에는 사르코지 정부 출범 이후 여러 부서가 통합된 노동, 사회, 가정, 연대 및 도시부(Ministère du Travail, des Relations Sociales, de la Famille, de la Solidarité et de la Ville)로부터 통제와 지원을 받으며, 가족수당지급처(CAF)나 모자보건국(PMI) 등의 여러 행정기관과 연결되어 있다. 영아보육비의 경우 정부 기관인 가족수당지급처에서 부모의 수입에 따라 차등 지원을 하고 있다.

만 3~5세 유아교육을 담당하는 유아학교는 교육부(Ministère de l'

Education Nationale)에서 재정지원과 관리를 한다. 교육부 내의 아동 청소년 담당 부서에서 교육과정과 교원 관리에 대한 인사업무를 담당한다. 공립학교의 경우 교육부로부터 100% 지원을 받아 운영한다.

1982년 지방분권화 정책이 수립된 이후 중앙집권적 형태를 띠고 있던 보육 및 교육행정체제는 지방분권적인 체제로 전환되었다. 지방분권화 이후 국가는 법령 공포나 조정을 통해 정책 방향을 제시하며 중앙 지휘자로서의 역할을 한다. 도(département) 단위의 지방자치단체는 보육시설의 설립, 시설인가, 개축심사, 관리 및 감독을 담당한다. 도 의회가 보육시설에 관한 심사에 관여하며 모자보건국(PMI)은 보육시설을 관리 감독하는 기관이다. 또한 먼(commune) 단위의 기초지방자치단체는 해당지역의 보육시설 설립과 운영에 대한 재정 지원을 하며 영유아 가정에 보조금 지급 업무를 담당한다. 한편 각 도시의 시청(mairie) 내에 있는 유아담당 부서(Petite Enfance)에서는 영유아 보육기관 및 서비스와 유아학교에 대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부모의 자녀 교육 및 보육에 대한 신청을 받아 관련된 유아 학교나 보육시설과 연계한다. 유아학교 입학에 관한 상담 및 신청을 받아 관내에 있는 유아들의 취학을 담당하며 보육기관이나 유아교육 기관의 부모의 소득에 따라 차등을 두고 급식비를 관리한다.

가. 가족수당지급처 (CAF : Caisses d'Allocations Familiales)

프랑스의 가족정책은 주거, 여가, 자녀교육, 보육 및 건강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각 가정이 일상생활을 원만하게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CAF는 1946년에 시작되었으며 사회보장 행정기관에 포함된다. 현재 프랑스 전역에 123개의 CAF가 있으며 국립 가족수당기금 관리처(CNAF : Caisse Nationale d'Allocations Familiales)에서 감독한다. CNAF와 CAF는 국가기관이 감독하고 고용주의 출자금으로 재정 운영되는 민법상의 사회보호기관으로 재정부, 감사원, 지방의 회계업무소, 보건사회업무국(DDASS: Direction départementale des affaires sanitaires sociales), 사회복지 총괄장학국(IGASS: Inspection générale des affaires sociales et la solidarité)이 협력하여 관리한다(황성원, 2002).

수당(allocation)은 크게 가족수당, 주거비(집세) 보조금, 장애인 보조금 그리고 최저소득 보조금 등 4가지의 범주로 나뉜다. 이 중 가장 광범위하게 운용되고 있는 가족수당은 가족의 생계를 국가가 일정 정도 분담하고자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가족수당의 재원은 사회보장기금 징수처(URSSAF: Unions de recouvrement des cotisations de sécurité sociale et d'allocations familiales)에서 징수한 사회보장기금이다. 이 기금을 소득과 자녀수에 따라 수당의 유형을 결정한 후차등 지급한다.

가족수당은 국적에 상관없이 부모가 0세 이상 21세 미만인 자녀와 함께 지속적으로 프랑스에 거주하면 신청할 수 있다. 2009년 자료에 의하면, CAF는 매년 국세청에 국민이 한 해의 소득을 신고한 자료를 검토하여 각 개인에게 지급할 수당의 유형을 결정한다. 예를 들면, 200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정부가 제공할 수당은 2007년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자녀수에 따라 분류해 놓은 아동

과 관련된 가족수당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Caf, 2009).

〈첫 번째 자녀부터 지급되는 수당〉

○ 영아육아수당(Paje: La prestation d'accueil du jeune enfant): 영아기 자녀를 대상으로 한 수당의 종류로는 출생 및 입양수당, 기초수당, 부모가 자녀 양육으로 인해 취업을 자유선택할 때 지급되는 보조수당, 보육기관 자유선택 보조수당이 있다.

- 출생 및 입양수당(La prime a la naissance ou a l'adoption) : 부모가 임신을 했을 경우에는 14개월 이내에 해당 CAF나 의료보험공단(Cpam: Caisse primaire d'assurance maladie)에 알리면 임신 7개월부터 889.72유로가 지급된다. 자녀를 입양한 경우에는 만 20세 미만의 자녀에 해당되며 1779.43유로를 지급한다. 이러한 수당 지급은 개인의 2007년 소득에 따라 차등 결정되며, 자녀수에 따른 부모의 소득 한도액을 넘지 않아야 한다(표 3.2참고).

〈표 3.2〉 연간소득의 한도액(2007년)

단위: 유로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자녀 수(출산예정 포함)	부모중 한쪽만 소득이있는 경우	편부모 또는 부모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	32,813	43,363
2	39,376	49,926
3	47,251	57,801
자녀인당 추가	7,875	7,875

- 기초수당(L' allocation de base): 출산과 입양의 경우 2자녀 이상일 경우에 해당한다. 출산은 자녀가 만 3세까지, 입양의 경우 만 20세까지 지급되며 소득액이 한도액 미만(표 3.2참고)일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매월 177.95유로가 지급된다.

- 취업 자유선택 보조수당(Clca: Le complément de libre choix d'activité): 만 3세 미만의 자녀가 1명 이상(입양포함)일 경우 제공되며, 육아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었거나 시간제로 일을 할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표3.3참조). 자녀가 1명일 경우에는 6개월 까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만3세까지 지급되며 입양의 경우에는 지급기간이 다르다.

〈표3.3〉 취업 자유선택 보조수당 금액

	직장을 그만둔 경우	반일제 미민인 경우	50-80% 시간제인 경우
기초수당수급가정	374,17 유로	241,88 유로	139,53 유로
기초수당비수급가정	552,11 유로	419,83 유로	317,48 유로

- 보육기관 자유선택 보조수당(Clcm: Le complément de libre choix du mode de garde): 만 6세 미만의 유아가 있는 가정의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자격을 갖춘 보육모나 가정 보육모를 고용할 경우 사회보장기금(자격을 갖춘 보육모 고용 시에는 100%, 가정정보모 고용 시에는 50%, 자녀가 만 3세 미만인 경우 최대 408 유로까지, 만 3~6세일 경우에는 최대 204유로까지)을 보조해 준다. 금액은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모자보건국 소속의 가정 보육모의 급여는 유아 1명 당 하루 43.55유로를 넘을 수 없다.
- 등록된 가정 보육모 고용을 위한 가족지원수당 (Afeama: L'aide à la famille pour l'emploi d'une assistante maternelle agréée): 2009년 기준으로 2004년 1월 이전 출생한 유아일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모자보건국 소속 가정 보육모를 고용할 경우 사회보장기금의

분담금을 보조해주며 일정 금액의 수당을 지급한다. 이 수당은 자녀가 만 6세까지 분기별로 지급되며 부모 월소득액의 85%를 넘을 수 없다. 보육모의 하루 급여는 유아 1명 당 하루 43.55유로를 넘을 수 없다.

- 자택 내 육아수당(Aged: L'allocation de garde d'enfant à domicile): Afeama와 마찬가지로 2009년 기준 2004년 1월 이전 출생한 유아를 가정에서 돌보는 보모를 고용할 경우 만 6세까지 사회보장기금의 50%를 분기별로 570유로 한도 내에서 보조해준다.
- 가족지원수당(Asf: L'allocation de soutien familial): 편부모 가정이나 위탁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가정에 지급되며, 편부모 가정은 아동 당 87,14유로, 위탁아동의 경우에는 116,18유로가 지급된다.
- 장애아동교육수당(Aeeh: L'allocation d'éducation de l'enfant handicapé): 장애아동을 둔 가정에 지급되는 수당으로 자녀가 만 20세가 될 때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전의 특수교육수당(Aes: L'allocation d'éducation spéciale)을 대신하는 수당으로 장애 정도에 따라 6등급으로 나뉘지며 93.41유로에서 1010.82유로까지 지급된다.
- 부모일일출석수당(Ajpp: L'allocation journalière de présence parentale): 아동이 중병이 있거나 중증장애가 있거나 큰 사고로 인해 간병인이 필요하거나 부모가 자녀를 돌보기 위해 휴직계를 냈을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이다. 양부모 가정의 경우 41,17유로, 편부모가정의 경우는 48.92유로로 매월 22일을 넘지 않으며 혜택 기간은 최대 3년이다.

- 개학준비수당(Ars: L'allocation de rentrée scolaire): 만 6~18세의 아동을 위한 개학준비금으로 지급되는 수당으로, 부모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만 6~10세까지 280.76유로, 만 11~14세까지 296.22유로 만 15~18세까지 306.51유로이다.
- 편부모수당(Api: L'allocation de parent isolé): 최소한 한 명의 자녀가 있는 편부모 가정 중 저소득일 경우에 지급되는 수당으로, 월 평균 급여와 편부모수당 최대 금액의 차액이 지급된다. 편부모수당의 최대 금액은 자녀가 없는 임신부는 583.80유로, 한자녀 가정은 778.40유로, 한 자녀 추가 시마다 194.60유로가 추가된다.

〈두 번째 자녀부터 지급되는 수당〉

- 가족수당(Af: Les allocations familiales): 소득과 상관없이 두 번째 자녀부터 자녀가 만 20세까지 지급되는 수당이다. 두 자녀일 경우 매월 123.92유로, 세 자녀는 282.70유로, 네 자녀는 441.48유로, 그 뒤로 자녀 한 명 추가 시 158.78유로씩 추가된다.

〈세 번째 자녀부터 지급되는 수당〉

- 부가적 가족수당(Le complément familial): 세 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정에 지급되는 수당으로 기초수당에 연계되며, 마지막 자녀가 만 3세 이후부터 매월 156.60유로가 지급된다. 소득이 가족수당지급처(CAF)에서 책정해놓은 한도액을 넘지 않을 경우에 지급된다.

위에 소개한 수당들 중에서 영아육아수당(Paje)에 속하는 출생 및 입양수당, 기초수당, 취업 자유선택 보조수당, 보육기관 자유선택 보조수당은 출산장려와 보육지원정책과 직접적으로 연관된다. 이러한 수당지급으로 영아보육의 형태가 다양화되고, 가정 중심 보육이 활성화되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

나. 모자보건국 (PMI : Protection maternelle infantile)

모자보건국은 1945년에 산모와 영아사망률을 줄이고 예방접종을 통해 질병예방(18개월 이전의 의무예방 접종-BCG, 홍역, 풍진, 볼거리, B형 간염 등)을 위한 목적에서 설립되었다. 모자보건국은 지역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각 시의 시청 내 '가족영아부' 내 '가족영아국' 부서에 소속되어 있으며, 모자보건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모자보건국의 설립역사는 1874년 루셀법에 의해 영아사망률 조사 기구를 만들어 정기적으로 아동을 검진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한 것이 기초가 되었다. 그 후 1945년 모자보건국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졌다. 주요 업무는 초기에는 혼전 건강진단서, 임신기간 중의 검진, 아동의 건강 상태 감독, 부모 교육, 아동건강 진단서 발급 등이었으나 1962년 보건부 산하에 정식 기관으로 편입되면서 여러 번의 구조조정을 거쳐 그 역할이 점차 확대되었다. 1983년부터 영아와 임신부 건강지원 업무에서 점차 전 국민의 건강 지원으로 그 범위가 확대되었다. 각각의 모자보건센터(Centre de PMI)는 도의사의 책임 하에 있고, 도의회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기 때문에 모든 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똑같은 것은 아니다.

모자보건국의 주요 업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미래의 부모를 위한 예방조치

- 혼전 건강진단서: 혼인신고를 하기 위하여 신랑과 신부는 2개월 이전에 받은 건강진단서를 시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임신부 건강관리: 임신부는 임신기간 동안 건강상태를 검진 받고, 출산 이후까지 관리 받는다. 출산 전 7번의 의무 검진을 받아야 하며 이 검사를 이행해야만 만 3세까지 지급되는 유아보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예비 아버지 검사: 장애 관련 병력이 있는 경우나 산모의 검진 후 이상 증상이 나타날 때 실시된다.

2) 0~6세까지의 유아를 위한 예방조치

- 유아 의무 검진: 유아의 성장(신체, 정서, 근육발달)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검진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조기 발견과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생후 첫 해 동안 9번의 정기검진을 받으며 13~25개월 사이에 3번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 계속적인 의료관리: 유아학교에 다니는 유아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의료진단이 실시된다.
- 유아 건강지원 : 유아의 건강상태나 발육상태가 좋지 않아 특별한 치료나 간호가 필요한 경우, 모자보건국은 부모가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의무화한다. 아동학대가 의심이 되는 경우에도, 즉시 담당의사에게 연락하여 긴급대책을 마련한다.

모자보건센터에서 실시하는 모든 검사는 의료보험에서 전액 지원

되며 대부분 무료이다. 또한 센터 내에 산부인과, 소아과, 일반의, 조산사, 육아 전문가, 간호사 등의 의료진이 있어 센터에서 직접 진료를 받을수도 있고 필요시에는 가정방문을 통해 필요한 진료를 하기도 한다. 도의 재정상태에 따라 센터의 의료팀에는 영양사, 심리전공 상담사, 영유아 교사, 부부 상담사, 정신보건 상담사가 추가 구성되기도 한다. 이들은 도내의 학교 건강 서비스나 아동사회보장서비스와 같은 다른 여러 사회서비스 기관과 협력한다.

모자보건국은 피임약 보급에도 선구적 역할을 하고 있다. 모자보건 센터는 의료보험이 없는 미성년자와 성인에게 무상으로 피임법을 보급한다. 그리고 낙태와 전염성 있는 성병의 검진에 대한 사전 상담과 가족, 부부 생활 관리에 대한 상담을 한다.

임산부는 임신기간 동안 센터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조산원의 도움으로 집에서 진찰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센터의 주된 업무는 출산전후 영유아 관리서비스와 만 6세 미만의 영유아 중심의 서비스이다. 그 이유는 산전관리 특히 임신 6개월 이후 발생하는 모든 의료비, 입원비, 치료비는 국가 의료보험이 100% 부담하므로 임산부는 병원에서 주로 관리받기 때문이다. 몇몇 센터에서는 출산준비를 위한 교육을 제공하기도 한다. 또한 출산 후의 진찰도 모자보건국이 맡기도 한다. 한편 모자보건국은 보육시설(보육시설, 시간제 보육시설, 여가센터 등)의 의료지원, 기술적 지원뿐만 아니라 재정적인 측면에서도 서로 연계되어 서비스를 제공하며, 가정 보육모의 자격인증(agrément) 업무나 가정 보육모의 관리·감독이나 이들을 위한 보수교육 등을 담당하기도 한다. 참고로 가정 보육모의 자

격 인증기간은 5년이므로 5년마다 자격을 재검증 받아야 한다.

2006년 노동부 산하 사회업무 감독기관인 IGAS(Inspection générale des affaires sociales)의 보고에 따르면 18%의 임신부와 20%의 영유아(1세 미만 영아의 50%이상)가 모자보건센터에서 약 250,000번의 진료를 받았으며 400,000명이 진료를 받았다. 2004년 각 여성이 평균적으로 2.6번 진료를 받았고, 가정방문진료 횟수는 2.8번이다. 평균 진료시간은 38분이며 가정방문진료는 조산사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매년 36,000명의 새로운 자격을 갖춘 가정 보육모를 배출한다. 9,000명의 전문직원이 모자보건국에서 일을 하며 그 중에 2,000명이 의사이며, 약 5,000명이 육아 전문가와 간호사이다. 국가적 재정 지원은 약 7억유로에 달한다(Jounclain-Menninger et al, 2006).

〈표3.4〉 취업 자유선택보조수당 금액의 연도별 변화

임산부의건강						
	1985	1989	1991	1995	2003	2004
출산전 진찰장소	393	436	429	496	466	458
출산전 진찰횟수		44,200	40,935	48,400	40,843	39,997
진찰받은 여성 수			79,614	99,700	88,630	83,932
검사	456,000	374,000	316,000	369,100	317,204	223,932
가정방문한 여성 수	51,000	58,100	64,500	91,700	80,988	97,403
1000명의 출신을 위해 본 여성	67	75	85	125		
유아의건강						
	1985	1989	1991	1995	2003	2004
영아진찰장소	6,527	5,724	5,480	5,329	4,880	4,615
진찰			886,705	885,100	835,420	746,872
검사	2,741,000	2,914,000	2,707,000	2,707,200	2,308,702	2,152,735
육아전문가와 간호사의 가정방문			1,000,071	1,075,433	700,189	737,916
가정에서 본유아수			409,139	520,176	439,009	455,7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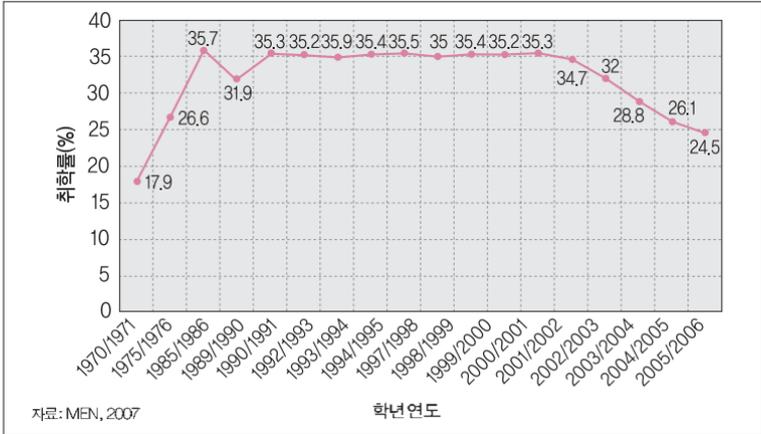
자료: DFESS, 2006

3. 최근 정책 동향

유아교육이 의무교육은 아니지만 무상교육 체제가 확립되어 있으므로 만 3세 유아의 거의 100%가 유아학교 취학률을 보이고 있다. 유아학교 취학 대상 연령은 만 3~5세이나 부모가 원하고 유아학교에 자리가 있는 경우 만 2세 유아도 다닐 수 있다. 현재 만 3~5세 유아들의 유아학교 취학률은 100%이며, 2008년을 기준으로 만 2세 유아의 유아학교 취학률은 20.9%이다. 이러한 유아학교 취학 현황은 1960년에 36%에 불과하였으나 그 이후에 급격히 개선된 것이다. 2007-2008년도⁴⁾에 유아학교에 입학한 유아는 2,551,000명이었으며 그 중 87.5%가 공립학교에 입학했다. 현재 프랑스에는 17,426개의 유아학교가 설립, 운영되고 있으며 그 중 공립학교가 17,213개교, 사립학교가 213개이다. 유아학교 교사는 모두 99,080명이며 공립학교 교사가 88,748명, 사립학교 교사는 10,332명이다.

최근 만 2세아의 유아학교 조기입학에 관한 논쟁이 한창인 가운데 만 2세아의 취학률은 2007년 21.9%, 2008년 20.9%(매년 14,000명)로 계속 감소하고 있다(MEN, 2009).

⁴⁾ 프랑스는 학기가 9월에 시작해 12월까지 1학기, 12월은 겨울방학, 2학기는 3월부터 6월까지이고 7,8월은 여름방학이다.



[그림 3.1] 프랑스의 만 2세아취학률 변화

만 2세아의 유아학교 조기취학에 관한 문제는 1989년 법령 (Loi de 10 juillet 1989)에 의해 사회적으로 빈곤한 환경(교육투자우선구역, ZEP)에 있는 유아들에게 우선적으로 권장되었다. 2005년 국립통계연구소 (INSEE)의 보고서⁵⁾에 따르면 2세 조기입학아들이 3세 입학아들과 비교해서 초등학교 교육에서 반드시 성공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 1학년 과정(CP)에서는 2세 입학유아들이 3세 입학유아들보다 학업성취도 면에서 9%정도 높지만 6학년 과정에서는 그 차이가 불어에서는 1%, 수학에서는 4%에 불과함이 밝혀졌다. 또 2006년 국립통계연구소 (INSEE)의 연구결과 2세 입학아동들의 86%가 초등학교에서 특정과목에 낙제없이 진학함으로써 3세 입학아동들의 82%보다 다소 높은 학업성공률을 보이나 그 차이가 크지 않음을 보고하고 있다.

그 결과 2세아 유아학교 조기입학을 찬성하는 측은 조기취학이 미래의 학습부적응이나 어려움을 예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강조하고

5) Portraits social de la France, 2005.

(Plaisance, 1992), 반대하는 측은 2세 조기 유아학교 취학이 생체리듬, 언어습득, 심리발달 등 여러 가지 면에서 발달적 또는 적응상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즉, 발달심리학적인 측면에서 아직 학교생활에 준비되지 않은 유아를 조기에 가정과 부모에게서 분리시킴으로써 심리적인 불안감과 공격성 그리고 학교생활에 대한 부정적 경험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서 반대 입장을 표명한다. 따라서 유아학교보다는 보다 가정과 유사하게 편안한 환경인 유아원과 같은 보육시설에서 단체 생활을 경험한 후 유아학교로 진학하게 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한 방법이라 주장하고 있다(Golse & Brisset, 2006). OECD국가 중 만 2세부터 유아학교 취학이 가능한 나라는 프랑스와 벨기에 둘 뿐이다.

한편, 학부모단체인 PEEP(Parents d'élèves de l'enseignement public)의 조사에 의하면 2세아의 조기입학에 대해 60%의 부모가 반대하는 한편 39%만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찬성하는 부모는 대부분(78%) 자녀의 감각발달을 위해서, 나머지 16%는 보육시설의 부족 때문에, 4%는 보육기관보다 유아학교에 보내는 것이 비용의 측면에서 저렴하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국립 연구·평가·통계국(Direction de la recherche, des études, de l'évaluation et des statistiques: DREES)의 자료에 따르면, 2007년 만 3세 이하 대부분의 미취학 유아(64%)는 부모가 돌보았으며 4%는 조부모, 31.5%는 보육시설이나 가족이 아닌 자격을 갖춘 가정 보육모 등에 의해 돌보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에서도 보육시설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9년 니콜라 사르코지는 2012

년까지 보육시설에 200,000명의 유아들이 보육될 수 있는 보육시설 증설 계획을 발표했다. 프랑스 정부는 사회활동 국가재정(FNAS)을 연 7.5%(1.2천만 유로)를 인상하고 보육기관의 유형을 다양화시키기로 하였다. 보육시설의 부족을 해결해줄 새로운 해결책은 2008년 국회의원인 미셸 타바로가 제안했던 만 2~3세 아동을 위한 유아원(jardin d'éveil)이다. 이 유아원(jardin d'éveil)은 크레쉬(교사 1명당 8아동)와 유아학교(교사 1명당 15아동)의 중간 형태로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연 200일 이상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교사 한명당 8~12명의 아동을 담당하게 된다. 최근 가족부 정무차관인 나딘 모라노(Nadine Morano)는 2012년까지 8,000명의 유아들이 다닐 수 있는 유아원(jardin d'éveil) 신설 계획을 밝혔다.

2008년 교육부 장관 자비에 다르코스(Xavier Darcos)는 2~3세반 유아교사 양성에 관해 문제를 제기했다. 고등학교 졸업 후 5년간의 전문교육과 자격시험을 합격한 교사가 아동 '낮잠 재우기'와 '기저귀 갈기'를 위한 것이라면 합리적이지 않다는 점을 들어 영아반 유아교사의 교육기간이 너무 길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문제로 2008년 노동부 장관인 자비에 베르트랑(Xavier Bertrand)은 주말에 일하는 7백만 부모의 자녀양육 문제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일주일 내내 쉬지 말고 주말에도 문을 여는 새로운 크레쉬(nouvelle crèche) 형태를 제안하고 있다. 물론 모든 크레쉬가 주말까지 운영해야 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부모들의 근로 형태에 따라 주말 운영의 필요가 있는 지역이나 기관부터 점차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만약 일요일에도 일을 해야 하는 근로자가 일요일을 쉴 경우 월급의 15~20%가 삭감될

수 있으므로 일요일에도 근무를 해야하는 상인이나 근로자 등을 위한 서비스를 확충하지는 제안이다.

프랑스 유아교육·보육 서비스 이용 실태

1. 서비스 유형과 이용 실태

프랑스의 영유아 서비스는 연령에 따라 이원화되어 있으며 0~3세 영아를 대상으로 하는 보육서비스와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기관으로 구분된다. 공교육 및 보육서비스는 다시 대상연령에 따라 이원화될 수 있는데, 3세 미만의 영아를 대상으로 하는 보육시설(크레쉬:crèche)과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유아학교(école maternelles)가 있다. 3세 미만의 유아는 가족지원정책의 일환으로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보육정책이 확립되어 있으며, 3세 이상은 교육부에서 초등학교 이전의 유아교육 정책으로 접근한다. 두 제도는 관할부서도 서로 다른데, 보육정책은 사회보험청(Sécurité Sociale)과 전국 가족수당기금(Cnaf)에서 관할하고, 유아학교 교육은

교육부(Ministère de l'éducation)에서 관할한다. 현재 취업모의 자녀를 제외한 3세 미만 유아는 대부분 가정에서 부모에 의해 양육되는 반면, 3세 이상 유아는 모두(100%) 초등학교 이전의 기본학제에 포함되어 있는 유아학교(école maternelle)에 등록한다. 영유아를 위한 교육과 보육 서비스 유형과 각 서비스의 이용 현황을 제시하면 <표 4.1>과 같다.

〈표 4.1〉 0-3세 프랑스 보육서비스 유형

0-3세 아동의 보육	서비스 적용범위	비고
부모 양육	63%	정부의 재정지원받음
인증받은 가정보육모	18%	정부의 규제 받음
유아원 (영아보육시설)	10%	시설유아원 (지자체/비영리 서비스) 부모협동유아원 가정유아원 (가정보육과 연계) 기업유아원 (직장보육시설) 복합보육센터(개방기관) 시간제 유아원(임시보육시설)
조부모 양육	4%	
기타 서비스	5%	
3-5세 아동의 보육	서비스 적용범위	비고
유아학교(école maternelle : 초등교육제도에 속함. 지역에 따라 2세부터 등록가능)	2세 20.9% 3세 이상 100%	2세 반 (TPS) 3세 반 (PS) 4세 반 (MS) 5세 반 (GS)
유치원(jardin d'enfants)	2-5세	사립기관으로 유아교육서비스
보육원, 방과후 놀이방	전체 2천2백만 명 가운데 28만 명	방과 후서비스 기관
시간제 보육시설		임시보육시설

개별 보육의 유형	서비스 적용범위	비고
인증받은 가정 보육모		보육모 집에서 1-3명의 아동을 양육
가족유아원		가정유아원 네트워크에 소속되어 활동
보모		아동의 집에서 양육 규제받지 않음

프랑스 영유아 교육 및 보육은 프랑스 혁명 사상에 기초하여, 자유, 평등, 박애의 개념을 기초로 전개되고 있다. 그 결과 국가는 부모와 함께 유아의 보호자이며, 모든 유아들이 자신의 잠재가능성을 발휘할 수 있는 동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해 주는 책임자라는 인식을 기초로 하고 있으므로 프랑스에 거주하는 모든 3~5세 유아를 위한 교육체제가 잘 정립되어 있다. 프랑스 보육정책의 중요한 두 가지 목적은 첫째, 취업부모를 지원하는 것과 둘째, 모든 유아에게 동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는 것이다(Fagnani, 2003). 특히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유아학교 교육은 무상으로 제공되고 있다.

프랑스의 보육서비스는 전달방식에 따라 공공재원으로 제공되는 공공보육서비스와 민간재정으로 운영되는 민간보육서비스로 구분되나 이를 이용하는 부모들의 보육비용은 두 가지 방식⁶⁾으로 보조해 주고 있다.

프랑스의 보육서비스는 아동중심적 가족정책에서 시작되었지만, 현실적으로는 정부가 부모들의 일과 가정생활 양립을 지원하겠다는 정책적 의지가 바탕이 된다.⁷⁾

6) 공공재원으로 제공되는 방식(공보육서비스)과 민간보육서비스 이용시 보육비용을 보조하는 방식(가정 보육모 고용)

7) 1970년대 초부터 아동보육 영역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게 되며, 여성취업자 증가와 더불어 다양한 집단보육시설을 설치하게 되었다(시설유아원, 가정유아원, 미니유아원, 시간제 유아원 등)

프랑스 보육정책의 특성을 살펴보면 유아교육 제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교육기관을 통하여 제도화된 보편적 제공 방식으로만 3~5세 아동의 대부분이 조기교육의 혜택을 받고 있다. 또한 1994년 가족법 개정 이후 보육정책에서는 공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보다는 보육의 개별화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변화가 진전되고 있다(OECD, 2006).

프랑스의 보육기관은 전국적 조직인 전국가족수당기금 CNAF(Nationale Caisses d'allocations Familiales)에서 관할하며 CNAF는 가족수당기금(Caisses d'allocations familiales)를 통해서 지방정부가 보육시설을 건립하고 운영하는데 재정지원을 한다.

프랑스 정부는 1980년대 초부터 취업여성이 증가함과 함께 유아원 내에 영아를 위한 자리를 늘려달라는 요구가 끊임없이 증가함에 따라 1980년대 이후 유아원(crèche)에 보육서비스 부분을 점진적으로 확대시켜 왔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성의 노동인구 증가 및 요구에 따른 보육 수요를 충족하지 못해 보육서비스 제공의 부족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2007년 3세 미만 영아의 보육실태 자료에 따르면 공보육시설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영아의 비율은 10%에 불과하고, 부모가 집에서 양육하는 경우가 63%, 그 외 자격인증 보육모(assistante maternelle agréée)나 가정보모(Garde à domicile simple)를 고용하는 경우가 20%에 이른다.⁹⁾

〈표4.2〉 3세 미만 아동의 보육 실태 (2007)

보육형태	아동비율(%)
유아원	10
자격인증보육모	18
가정보모	2
부모	63
학교	2
조부모, 가족	4
기타	1
계	100

자료 : DREES, 2007. Enquete 〈Modes de garde et d'accueil des jeunes enfants〉.

보육서비스 및 보육시설의 자리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보육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한 실태이며, 〈표4.2〉에서 볼 수 있듯이 특히 3세 미만 영아의 경우 공공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보다는 부모가 직접 양육하거나 개별적으로 보육수당을 지급받는 경우가 훨씬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3~5세 유아는 대부분 유아학교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유아학교가 쉬는 수요일의 보육이 문제가 된다. 이런 경우 부모가 돌보는 경우가 가장 많고, 다음이 조부모나 가족구성원 중 한 명이 돌보는 것으로 나타난다(표4.3참조).

8) 2001년 기존의 보육시설(유아원, 유치원, 기타 시설 등)에 영아를 위한 자리를 만들어 내면 지원을 받게 하였다. 이 계획은 이들 시설에 정부의 공공투자금액을 두 배로 제공하여 이들 보육시설에서 30,000-40,000자리를 추가로 만들어 낸다는 목적이다(LEO, 2004).

〈표4.3〉 3-5세 유아의 수요일 보육 실태(8시-19시)

보육형태	이용유아비율(%)
야외수련장, 여가센터, 문화, 체육, 종교활동	7
자격인증보육모	5
가정보모	1
부모	73
학교, 과외, 학교내 보육실	2
조부모, 가족	11
기타	1
합	100

자료: DREES, 2007. Enquête « Mode de garde et d'accueil des jeunes enfants »

가. 보육시설(Crèches)

영유아 보육시설은 크게 공립과 사립으로 나뉘며 보육유형에 따라 시설보육(accueil collectif)과 가정보육(accueil familial)로 구분된다. 집단보육시설의 유형으로는 집단 보육시설(crèches collectives), 유치원(jardins d'enfants)⁹, 시간제 보육(haltes-garderies)이 있으며, 가정보육기관으로는 가정보육(crèches familiales)이 있다. 그 외에 집단보육과 가정보육을 겸하거나 정규보육과 시간제보육을 병행하는 혼합형 보육시설(établissements multi-accueil)도 있고, 개인보육유형으로는 인증된 보육모(assistante maternelle agréée), 가정보모(nounou à domicile) 등의 제도도 운영되고 있다.

⁹ 유아학교와는 구별되는 만 2세에서 6세의 유아를 보육하는 정시제 보육기관이다.

-
- 집단 보육시설(Les crèches collectives): 집단 보육시설은 생후 10주부터 3세 미만 영아를 부모가 일하는 시간에 보육하는 기관으로 일반적으로 7시부터 19시까지 운영한다. 서비스가 필요한 3세 미만의 모든 영아들은 보육시설에 등록할 수 있으며, 장애 유아도 대상에 포함된다. 보육시설은 공공재원으로 지원되며, 보육전문가에 의해 보육된다. 6세 미만 유아의 건강을 관리하는 모자보건국(Protection Maternelle et Infantile)에서 관리 감독하고 있다.
 - 전통보육시설(crèches traditionnelles/de quartier): 집 근처에 설치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보육시설로 정원 60명 미만의 시설이다. 하루에 8-12시간 운영하며 밤과 일요일, 공휴일에는 닫는다.
 - 직장보육시설(crèches de personnel): 부모들의 직장에 설치된 보육시설로 직업장의 고용주가 운영하며 운영 시간은 기업이나 행정 업무시간(예: 병원)에 맞춘다. 보육시설의 최대 수용인원은 60명이다.
 - 부모협동 보육시설(crèches parentales): 영유아의 부모들에 의해 운영되는 보육시설로 1901년 법령에 의해 처음 조직되었으며 3세 미만 영아 부모들은 주중에 하루나 만나질 정도 보육시설에서 각자 맡은 역할을 담당한다. 최대 수용인원은 20명이며 가족들의 요청과 심의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예외적으로 25명을 받는 곳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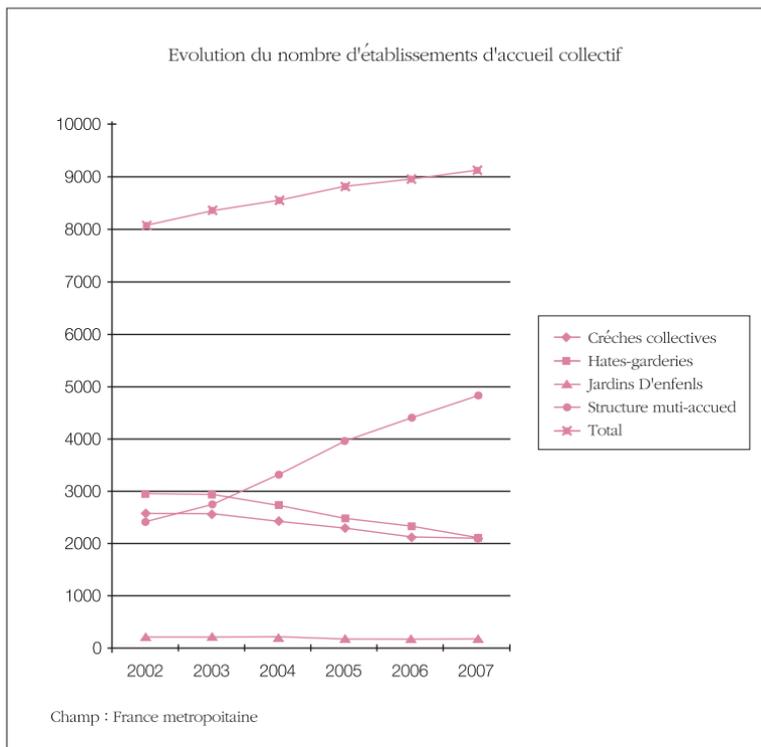
- 유치원(jardins d'enfants): 만 3~5세의 유아를 위한 정규교육기관으로 부모는 유아학교와 이 기관 중 양자택일하여 자녀를 보낼 수 있다. 보육시설과 유아학교의 중간 형태로 놀이와 연습을 통한 유아의 신체, 정신 발달을 목표로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만 2세 유아도 이용할 수 있다. 최대 수용인원은 80명이다.
- 시간제 보육(haltes-garderies): 만 6세 미만의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보육시설로 특별히 3세 미만의 영아들에게는 다른 아이들과의 만남, 공동활동을 경험하고 유아학교 교육을 위한 준비기관이다. 집단보육시설과 마찬가지로 최대 수용인원은 60명이고, 부모협동으로 운영되는 곳의 경우에는 20-25명 선이다. 이용시간은 1시간~종일반까지 다양하며, 부모가 일을 하지는 않지만 자녀를 몇 시간 맡길 곳이 필요할 때 주로 이용하는 시설이다.
- 가정보육(crèches familiales): 1960년대에 설립되었으며 등록된 보육모들로 조직된 가정보육시설이다. 등록된 보육모들은 지방정부에서 임금을 받으며, 국가보육위원의 관리감독을 받는다. 보육모들은 자신의 집에서 1~3명의 유아를 시간제로 보육한다. 보육시설과 보육모 제도의 중간 해결책 의미를 지니며 수용인원은 15명을 넘을 수 없다.
- 혼합형 보육시설 (établissements multi-accueil): 만 6세 미만의 유아를 대상으로 한 보육시설의 다양한 특성이 혼합된 기관으로

정규보육(유아원, 유치원)과 시간제보육(시간제탁아소)을 병행한다. 이 시설은 전통적 보육시설(60명)의 형태로 운영되거나 부모합동 보육시설(20-25명)의 형태로 운영되기도 한다. 이 시설들 중 몇몇 시설은 시설보육과 가정보육을 병행하기도 하는데 수용인원은 100명을 넘지 않는다.

- 등록된 보육모(assistante maternelle agréée): 등록된 보육모들은 자신의 집에서 부모들이 의뢰한 만 3세 미만의 영아를 보육한다.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보육모가 개인자격으로 유아를 보육하는 것과 가정보육시설에 고용되어 보육하는 것이다. 가정보육시설에 고용된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시설을 방문하여 유아에게 교육활동을 제공하거나 소아과 의사에게 정기검진을 받도록 해야한다.
- 가정보모(nounou à domicile): 가정보모는 광고나 시설동호회를 통해 모집되며 고용 시 보육시간, 고용기간, 휴일, 급여에 대한 것을 계약서에 명시한다.
- 미니보육원(mini-crèche/micro-crèche): 2007년 법령(décret n° 2007-206 du 20/02/2007)에 의해 시작된 새로운 형태의 보육이다. 3명의 전문인력이 만 6세 미만의 유아를 최대 9명까지 받을 수 있다. 유아보육장소는 아동을 보육하기 위한 안전시설이 잘 갖추어져야 한다.
- 유아원(jardin d'éveil): 보육시설 부족현상의 대안으로 2009년 새

로 제안된 보육형태이다. 가정과 영유아보육기관, 보육모 또는 유아학교의 중간 형태이며 유아의 전인발달을 도모하고 유아학교에서의 빠른 적응을 목표로 한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계속 늘려갈 예정이다.

[그림4.1] 민간보육시설 변화



자료: DREES, Enquêtes PMI

2007년 말 집단보육시설은 9,129개로 2003년이후 매년 평균 2%씩 증가했다. [그림4.1]에서 볼 수 있듯이 혼합형 보육시설(Structure

multi-accueil)은 계속 증가했으나 단일형 보육시설(Structure mono-accueil)인 집단보육(Crèches collectives)과 시간제 보육(Haltes-garderies)은 감소하고 있다. 2003년부터 평균 감소율은 6%이다. 정확한 기관 수의 변화는 아래의 <표4.4>와 같다.

<표4.4> 만6세미만 유아를 위한 집단보육기관과 가정보육시설의 수

기관 형태	기관 수(프랑스 본토)						증가율(%)	연평균 증가율(%)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6/2007	2003-2007
단순형 보육시설	5685	5666	5298	4913	4595	4350	-5.33	-6.4
민간보육시설	2539	2548	2401	2277	2105	2077	-1.33	-5
지역 전통	2078	2114	1989	1885	1719	1731	0.70	-4.9
직원	220	209	217	206	204	164	-19.61	-5.9
부모협동	241	225	195	186	182	182	0.00	-5.2
시간제 보육	2929	2911	2699	2449	2303	2083	-9.55	-8
전통	2715	2711	2555	2315	2190	1982	-9.50	-7.5
부모협동	214	200	144	134	113	101	-10.62	-15.7
유치원	217	207	198	187	187	190	1.60	-2.1
혼합형 보육시설	2400	2712	3273	3915	4360	4779	9.61	15.2
전통	1765	2103	2716	3363	3811	4123	8.19	18.3
부모운영	430	411	349	329	311	306	-1.61	-7.1
시설/가족	205	198	208	223	238	290	21.85	10
집단보육 합계	8085	8378	8571	8827	8955	9129	1.94	2.2
가정보육 서비스 (가정유아시설제외)	921	914	875	848	842	799	-5.11	-3.3
기관합계	9006	9292	9446	9676	9797	9928	1.3	1.7

자료: DREES, Enquêtes PMI

민간보육기관은 대부분의 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므로 부모들은 자신의 소득수준과 자녀수에 따라 저렴한 보육료를 차등적으로 부담하고 있다. 시간당 보육료는 0.3유로-4유로까지 차등적으로 지불하며 나머지 비용은 Caf(가족수당지급처)나 지자체에서 부담한다. 파리나 대도시의 경우 민간보육시설을 많이 이용하고 지방의 경우엔 가정 보육모에 의한 개인보육을 선호한다.

나. 유아학교 (école maternelles)

프랑스는 6세 미만 유아를 위한 교육에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다.¹⁰⁾ 원래 유아학교는 19세기 소외된 유아를 위한 자선프로그램으로 시작하여, 20세기 중반 현대적 유아학교로 전환하였다. 프랑스의 유아학교는 학령 전 공교육 기관으로 기본 학제 속에 포함된 정규 교육제도로 확립되어 있으며, 전면 공공재원에 의해 운영된다(Kamemman, 2001). 유아학교는 프랑스 교육제도의 핵심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민주주의의 요람”으로 불리며, 유아들이 미래의 역량있는 시민으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지적, 정서적, 사회적 기초학습을 제공하는 것을 기본 목표로 한다(Jenson & Sineau, 2001; Keelan, 2003).

현재 3~6세 미만 유아 대상의 유아학교 교육은 의무는 아니지만 무상으로 제공되며, 교육부에서 관장한다. 재원은 교육부가 65%, 지방정부가 35%를 부담함으로써 부모의 부담비용은 전혀 없다(Jenson & Sineau, 2001). 이민자의 자녀나 장애유아를 비롯해 모든 유아는 부모가 원하기만 하면 유아학교에 다닐 수 있다(L113-1 du Code de

10) 의무교육연령이 6세임.

l'éducation). 유아학교는 공립과 사립이 있으나 대부분이 공립이다. 모든 유아학교는 종일제(8시 30분-16시 30분)로 운영되며 주 35시간 운영한다. 매주 수요일은 휴교하지만 토요일은 반일제로 운영함으로써 교육 운영시간을 보충한다. 유아학교 운영시간이 끝난 후 세 명 중 한 명은 학교 내에 있는 방과 후 보육교실에서 18시 30분-19시까지 돌보아진다. 급식(cantine) 이용료와 방과 후 보육료는 부모의 소득에 비례해 부담한다. 3~5세 유아교육 수혜율이 유럽 내에서 가장 높은 프랑스의 유아교육은 1995년 이래로 만 3~5세 유아의 100%가 등록해 있다.

〈표4.5〉 연령별 유아학교 취학을 변화 (공립, 사립)

	단위: %			
	2세	3세	4세	5세
1980-1981	35.7	89.9	100	100
1990-1991	35.2	98.2	100	99.4
2000-2001	35.3	100	100	100
2005-2006	24.5	100	100	100

자료: DEPP, 2006. 〈〈Repères et références statistiques〉〉

유아학교의 입학 대상은 원칙적으로 만 3세부터 6세 미만 유아들이나 필요한 경우 만 2세에게도 그 기회가 제공된다. 특히 이민자나 저소득 계층이 밀집된 지역에 지정되어 있는 교육투자우선지역(ZEP)의 유아들을 대상으로 2세 조기입학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유아학교 학급 편성은 기본적으로 연령에 따른 구분을 하고 있는데, 만 2~3세는 매우 어린반(TPS), 만 3~4세는 어린반(PS), 만 4~5세는 중간

반(MS), 만 5~6세는 큰반(GS)으로 구분된다. 각 반은 20명 정도의 유아로 구성되며, 국가 자격을 갖춘 유아학교 교사(maitresse) 한 명과 보조원(dame de service)으로 이루어진다. 최근 교사 1인 당 유아 수의 비율을 낮추기 위해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2. 유아교육 및 보육 전문 인력 양성

프랑스의 유아교육 및 보육담당 전문가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된다. 보육시설에서 근무하는 보육사와 유아학교에서 근무하는 유아교사로 나누어진다. 유아교육 및 보육에 종사하는 전문 인력 양성 체계는 다음과 같다.

〈표4.6〉 프랑스 유아교육 및 보육교사 양성체계

영역	기관	대상연령	교사	관련전문가
영·유아 보육	보육시설 (O'èche)	0~3	영·유아보육사 (Educateur de Jeunes Enfants) / 보육전문가 (Puéricultrice)	준 보육사 (Auxiliaire de puériculture)
	시간제 보육 (Haute-garderie)	0~6		
	유치원 (Jardin d'enfant)	2/3~6		
	기타	0~6		
	가정보육 (Assistante maternelle)	0~6	가정보육모 (Assistante maternelle)	
유아교육	유아학교(Ecole maternelle)	2/3~6	유아교사 (Professeur des écoles)	보조교사(ATSEM)
방과 후 활동	방과 후여가센터 (Centre des bisis)	2/3~6	사회문화교육전문가 (Animateur socioculturel)	

자료: 이화도, 원수현 (2007). 재구성

가. 영 유아 보육사 (EJE: Educateurs de jeunes enfants)

영·유아 보육사는 0~5세 유아의 보육을 담당하는 전문가로 다양한 형태의 보육시설(crèche collective, jardin d'enfants, haltes-garderies, crèche familiale)에서 일한다. 보육사가 되기 위해서는 전문양성학교(Institut régional du travail social)에서 2년간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국가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시험의 합격과 함께 보육시설에서 15개월 동안의 실습과 1500시간의 7개 학습영역의 이론 학습을 해야 한다. 2005년 영·유아보육사 국가자격증(DEEJE: Diplôme d'État d'éducateur de jeunes enfants)¹¹⁾이 신설되었다. 시험은 4단계로 이루어지며 논문발표, 교육활동의 3가지 과제에 대한 구두시험, 전문적 의사소통 필기시험, 종합시험을 통과해야 보건사회부서(DRASS: Direction régionale des affaires et sociales)로부터 자격증을 받게 된다. 보육사의 자격 유형은 보육전문가(puéricultrice), 준보육사(Auxiliaire de puériculture), 가정 보육모(Assistante maternelle)로 구분되며, 대개 이들이 함께 한 팀으로 일하는 경우가 많다.

나. 보육전문가 (Puéricultrice)

보육전문가는 보육시설장 자격을 가지며 1947년부터 생긴 국가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보육전문가양성학교(Ecole de puéricultrice)에서 3년 과정을 이수하거나 간호사나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했을 경우에는 보육전문 양성학교의 1년 과정을 이수하고 이 기간 동안 국가고사, 논문, 구두시험을 통과해야한다. 실습은

11) Décret n° 2005-1375 du 3 novembre 2005

보육시설, 모자보건국(PMI), 소아병동, 산부인과, 신생아실에서 한다.

다. 준 보육사 (Auxiliaire de puériculture)

준 보육사는 영·유아를 직접 돌보는 일을 하며 보육시설에서 간호사나 보육전문가의 보조적 역할을 한다. 1947년에 생긴 국가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중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으로 보육전문 양성학교에서 1년 간의 이수과정을 거쳐 구두, 필기, 실기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이론과 실습교육은 장애아, 심리부적응아, 질환아, 응급처치법 등 총괄적인 유아발달의 지식 획득에 중점을 두고 있다. 17주간의 실습기간을 이수한 후 자격증이 주어진다.

라. 가정 보육모 (Assistante maternelle)

1992년 법령에 따르면 가정 보육모 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모자보건국에서 60시간 동안 교육을 받아야 하고, 보육시설에서 일정 기간 동안 실습을 받아야 한다. 자격이 인증된 보육모에게는 인증서(attestation)가 부여되며 유효기간은 5년이다. 전문교육과정은 5년마다 자격증을 갱신하기 위해 필요하다(정미라, 황성원 2003). 또한 자격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신체 건강하고, 유아를 보육하기에 적합한 환경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는데, 이는 유아가 편하고 안전하며, 발달에 적합한 공간이 확보되게 하기 위함이다. 보육유아의 수는 자신의 자녀를 포함하여 원칙적으로 3명이고 3명을 초과할 시에는 시·도 의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유아교사 (Professeur des écoles)

프랑스에서 유아교사는 사범학교(école normale)에서 양성되었으나 1991년부터 교원양성기관인 IUFM (Institut Universitaire de la Formation des Maîtres)¹²⁾에서 양성된다. 1991년 이전에는 유아교사는 초등교사와 함께 양성되지 않았다. 바칼로레아 이후에 고등교육기관에서 2년간의 전문교육을 받은 후 유아학교에서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1991년 이후 유아교사는 초등교사와 함께 교사전문양성기관(IUFM)에서 양성 되는데, 교사전문양성기관은 일반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입학할 수 있다.

2년 간의 교사양성교육은 임용고시 준비반인 1학년 과정과 임용고시 합격 후 실습교사과정인 2학년 과정으로 나누어진다. 5년간의 고등교육을 받은 후에야 교사가 될 수 있다. 따라서 프랑스의 유아학교 교사는 OECD국가 중 가장 학력이 높다. <표 4.7>에서 볼 수 있듯이 1991년 이후 유아학교 교사 양성제도가 전문화되면서 입학자격이나 그 명칭도 달라졌다. 교사전문양성기관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예비교사는 유아학교 교사나 초등학교 교사 중 자신이 취득할 교사 자격을 선택할 수 있다. 이후에도 본인이 원한다면 일정 기간 동안은 유아학교에서, 또 일정기간은 초등학교에서 일할 수 있다. 그리고 내부 시험을 통해 학교장이나 장학사, 교사교육사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점이 유아학교 교육과 초등교육의 연계를 도모하는데도 도움이 된다.

12)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들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교사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대학원 수준(Master)의 종합교사 교육기관이다. 유초등교사 양성과정인 premier degré와 중등교사 양성과정인 second degré로 나누어진다. 각 학구(Académie)마다 있으며 각 지역의 여러 대학과 연계 운영되고 있다.

〈표4.7〉 1991-1992학년 이전 이후의 유아교사 양성체제 변화

	이전	이후
유아교사의 명칭	교사(instituteur)	학교교사 (Professeur des écoles)
전문교육 입학자격	바칼로레아(Baccalauréat)	학사(Licence)
전문교육 기간	2년	2년 (학사이후 2년이므로 대학원 수준)
양성기관	사범학교(Ecole normale)	교원양성기관(IUFM)
학생들의 연령	만 2-5세	만 2-11세
직장	유아학교	유아학교와 초등학교

자료: UNESCO, 2007

교사 임용 고시 (concours)는 학구(Academie)별 외부고사 (concours externes)와 2차 내부고사(secondes concours internes), 도별 1차 내부고사(premiers concours internes), 서류전형(voie d'inscription sur des listes d'aptitude)이 있다. 외부고사는 대학에서 교양 및 전공과정(licence)을 이수한 사람이 응시할 수 있으며 내부고사는 시험준비반에 등록되어 있거나 유·초등 교사직을 비롯한 특정 직업경험이 있는 사람이 응시할 수 있다. 서류전형은 5년 이상의 경력교사들(instituteur)을 대상으로 한다.

유·초등교사 자격증(CAPE: Certificat d'aptitude au professorat des écoles)은 국가임용고시를 합격하고 IUFM의 실습교사과정(2학년)을 이수한 후 평가에 의해 받을 수 있다. 평가는 유아교사로서의 전문 지식과 실제 현장능력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임용고시를 합

격했다 하더라도 평가에서 일정점수를 획득하지 못하면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한 번의 기회를 더 준다. 두 번째에도 통과되지 못한 경우에는 교사자격증을 주어지지 않는다.

바. 유아학교 보조교사(ATSEM: Agent territorial spécialisé des écoles maternelles)

정규교사를 도와 유아의 생활습관이나 질서유지, 급식 및 학습준비를 돕는 역할을 하며 특별히 유아의 위생과 안전을 담당한다. 보조교사의 자격증은 중학교를 졸업한 후 CAP 영유아 자격증을 준비하는 학교에서 2년 과정을 이수한 후 12주의 실습과정을 거쳐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자격증 취득 후 필기시험과 구두시험에 합격하면 보조교사로서 일을 할 수 있게 된다.

사. 사회문화교육전문가 (Animateur socioculturel)

사회문화교육전문가는 방과 후 여가센터(Centre des loisirs)에서 일하는 전문가로 유아의 자유선택활동 시간에 문화 및 체육활동을 주로 담당한다. 사회문화교육전문가가 주로 담당하는 활동은 미술, 연극, 노래, 비디오보기, 책읽기, 협동놀이, 자전거타기 등이다. 사회문화교육전문가 자격증은 2001년 BPJEPS(Brevet professionnel de la jeunesse, de l'éducation populaire et du sport)로 통합되었다. 유아학교에서는 15명의 유아 당 1명의 사회문화교육전문가가 배치되어 있다. 그 외 유아학교의 수업이 없는 수요일과 방학기간에 유아들이 주로 이용하는 방과 후 여가센터에서 근무한다.

3. 국가수준 프로그램

1989년 교육법¹³⁾이 제정되면서 프랑스의 초등교육은 유아학교 3년과 초등학교 5년 과정을 통합하여 3개의 주기별 편성 체제를 갖추어 유아학교와 초등학교의 연계성을 유지하도록 하였다(표 4.8 참조). 한 주기(Cycle)는 보통 3년 단위로 구성되며, 유아학교 3년과 초등교육 5년의 과정이 3주기로 구성되어 있다. 가장 초반단계는 유아학교의 3~4세 과정으로 “초보학습주기”라 명명하고, 2단계는 “기초학습주기”로 유아학교의 5세 과정과 초등학교 1, 2학년 과정이다. 마지막 단계는 “심화학습주기”로 초등학교 3, 4, 5학년의 과정이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기초학습주기인 2단계(Cycle 2)이다. 유아학교 5세반과 초등학교 1, 2학년 과정이 같은 주기에 포함되어 있다. 유아학교 5세반의 경우 유아교육과정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놀이적 특성에 기초하되 읽기, 쓰기 등 초등학교 1, 2학년 교육과정의 준비를 하고 있다. 또한 초등 1학년은 초등학교 학습의 준비 단계(cours préparatoire: cp)로 둔으로써 유아교육과 초등교육의 연계를 자연스럽게 도모하고 있다.

13) La loi d'orientation, 1989

〈표4.8〉 프랑스의 초등교육 학제

초등교육 Premier degré	초등학교 (École élémentaire)	심화학습주기 (Cycle3)	초등 5학년 (CM2)
			초등 4학년 (CM1)
			초등 3학년 (CE2)
		기초학습주기 (Cycle2)	초등 2학년 (CE1)
			초등 1학년 (CP)
			5세반 (GS)
	유아학교 (École maternelle)	초보학습주기 (Cycle1)	4세반 (MS)
			3세반 (PS)

자료: MEN, 2009.

유아교육의 최고 책임 행정기관은 교육부로 교육부 장관은 교육정책의 중요한 부분을 결정한다. 또한 교육부 산하 상설 자문기구인 교육과정 국가심의회(CNP: Conseil Nationale de programme)에서 교육과정 개편에 적극 참여한다.

프랑스의 유아교육과정은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쳤으며 현행 교육과정은 2008년 6월에 발표된 것으로 유아학교의 교육 목적을 자율성, 언어획득, 유아의 리듬에 맞춘 교육, 초등학교 진학을 위한 준비로 명시하고 있다(B.O. Hors-Serie N°3 du 19 juin 2008).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이 크게 5개 영역으로 나뉘어져있다.

- 말하기에 적응하기, 쓰기 발견하기: 어른과 함께 대화하고 표현하기, 지시사항과 이야기 이해하기, 불어(모국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기, 쓰기에 관심을 가지고 친숙해지기, 읽기, 쓰기 학습

준비하기

- 학생 되기: 더불어 살아가기, 시민의 규칙 알기, 협동하기, 자율적인 인간으로 행동하기
- 신체 운동과 신체로 표현하기: 신체 활동 연습
- 주변 세계 탐색하기: 사물, 재료, 생명체, 형태, 크기, 양과 수, 자신의 위치 알기
- 지각하기, 느끼기, 상상하기, 창조하기: 그림, 목소리, 듣기를 통하여 사물을 인식하고 느끼기

위와 같은 구분은 발달 영역에 의한 것이기 보다 유아의 생활을 통해 유아들이 성취해야 할 능력이나 생활 경험을 중심으로 한 것이다. 프랑스 유아교육과정에서는 특히 언어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듣기, 말하기를 바탕으로 구어표현의 신장 및 읽기와 쓰기는 초등학교와 연계 되므로 유아교육에서 초등학교의 기초를 형성한다.

가. 언어영역

구어능력 위주의 언어교육을 중심으로 5세반(GS)에서는 듣기, 말하기 뿐만 아니라 읽기와 쓰기의 기초적 학습을 준비한다. 구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타인의 말을 이해하고 자신의 생각을 타인에게 이해시키는 경험을 하도록 한다. 이야기 듣기를 통해 책과 친숙해지면서 자연스럽게 글자(알파벳) 쓰기 활동으로 연결시킨다. 또한 쓰기 활동의 초기 학습부터 그래픽 활동(그림 그리기)을 통해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쓰기 기술을 습득하도록 돕는다.

나. 사회영역

‘학생 되기’라 명명되어 있는 이 영역에서는 사회 속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법,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길러 사회 현상에 합리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주 내용은 기본 생활습관, 개인생활, 집단생활, 사회 현상과 환경에 관한 것이다. 유아들에게 집단생활에의 적응력을 키워주고, 타인과 협력하는 법을 가르쳐 남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인간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것이 사회영역의 목표이다.

다. 건강영역

건강영역에서는 신체 운동과 신체 표현 활동을 통해 주변 세계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형성하도록 한다. 다양한 신체활동과 연관된 교육활동을 하고, 건강을 위한 지식과 능력을 갖도록 한다. 유아의 신체리듬에 맞는 적합한 교육활동을 할 것을 강조하며 다른 영역 활동과 연계한 미술, 음악, 놀이를 통한 신체활동을 권장하고 있다.

라. 탐구영역

‘주변세계 탐구’로 명명된 영역으로 유아의 주변 환경 즉 사물, 생명체, 재료 등을 탐색하게 하여 관심을 가지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유아들이 능동적으로 주변을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제공하고, 시각적 자료를 이용하여 자신의 경험이나 탐색한 주제에 대한 그림이나 구성활동을 통해 재현하도록 한다. 물체를 구성하는 물질의 개념을 이해시키기 위해 물질의 고유한 특성을 알아보고 공간, 형태,

크기, 양, 수, 부피 등 다양한 기준에 의해 분류해 보는 경험도 제공한다.

마. 지각, 감성, 상상, 창조 영역

이 영역은 감각을 통해 유아의 감성, 상상력과 창의성을 키우는데 목적이 있다. 유아들이 예술적 감각에 눈뜨게 하기 위해 듣기, 관찰, 여러 방면의 예술적 표현을 조화롭게 접목시켜 유아의 다양한 표현을 장려한다. 시각적 활동과 청각적 활동으로 나누어 시각적 활동으로는 그림과 조형구성(만들기)을 위주로 창조하는 즐거움을 갖도록 돕는다. 청각적 활동으로는 다양한 악기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노래를 외워서 부르는 연습, 여러 장르의 음악을 듣고 표현함으로써 청각, 음성적 부분만이 아닌 언어, 동작, 미술 등의 영역과 연관시켜 활동한다.

프랑스 유아교육과정은 포괄적으로 기술되어 교육의 전체적인 방향만 제시하고 각 영역의 내용이 몇 가지 소개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은 교사들이 직접 구성한다. 5개 영역의 구분은 발달영역에 의한 것이기 보다는 유아교육을 통해 유아들이 성취해야 할 능력이나 생활경험을 중심으로 한다. 특히 영역 간 교육내용의 밀접한 상호관련성을 강조해 하나의 활동이 다른 영역의 목표와 직접적으로 연관된다는 점에서 구체적 영역을 특정한 영역에 분류시키지 않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정미라·황성원, 2003).

프랑스 유아교육 · 보육의 행 · 재정 지원

1. 행정 주무기관

프랑스는 1982년 3월 2일 지방분권법을 통하여 교육 자치를 실현하게 됨으로써 중앙정부(교육부)가 관할하던 상당부분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었고 이에 따라 재정 지원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게 되었다. 프랑스의 유아학교(école maternelle)는 공교육 기관으로 국가(교육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는다. 국가는 공립 유아학교, 초등학교 부속 유아학급, 교사양성을 위한 비용과 급여를 담당하고, 공립학교 신, 개축 공사비용, 건물유지 및 보수, 설비비용과 유아교육기관의 보조교사 등 비전문직 직원의 급여나 유아학교의 부가적 서비스 운영비용(여가센터와 같은 방과 후 프로그램)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분담한다(박은혜, 김명순,

신동주, 정미라, 2000).

또한 각 시(ville)마다 시청(mairie)의 한 부서인 학무국(Direction des affaires scolaires)¹⁴⁾에서 위와 같은 재정업무를 담당하며 주요 지원내역으로는 물품구입비(교과서, 공책, 교구, 교재, 종이류 등), 전기, 수도, 난방비 등의 시설유지비, 전화, 학교버스 등의 운영비와 수업용 기자재 구입비 등이다. 이밖에도 교사교육과 유아학교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위한 노력, 급식 시설 및 설비를 담당하며 급식비(부모소득에 따른 차등지급)를 지원한다(한지혜, 2003).

보육의 경우 중앙정부인 노동, 사회, 가정, 연대 및 도시부(Ministère du Travail, des Relations Sociales, de la Famille, de la Soliarité et de la Ville)에서 재정을 담당하며, 도(département) 단위의 지방자치단체는 보육시설 설립이나 시설인가 및 개축심사, 보육시설을 관리하고 감독한다. 면 단위의 기초지방자치단체(commune)는 해당지역의 보육시설 설립이나 운영에 관한 지원금을 보조하거나 영유아를 둔 가정에 보조금 지급 업무를 담당한다.

그밖에 가족수당 지급처(CAF)와 모자보건국(PMI)에서도 그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가족수당 지급처에서는 영아보육비를 부모의 수입에 따라 차등지원하며, 모자보건국에서는 보육시설의 의학, 기술, 재정적 부분을 관리, 감독하며 가정 보육모(assistante maternelle)의 자격인증(agrément), 관리, 감독, 보수교육을 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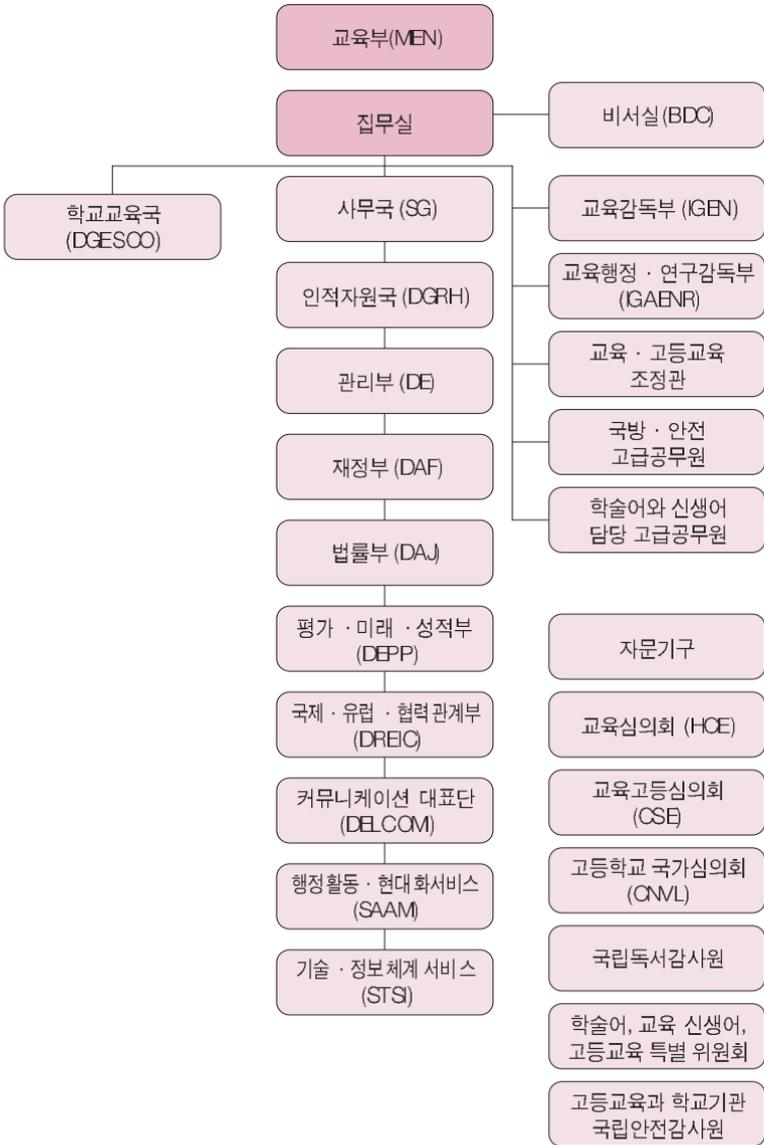
14) 피리시 학무국에는 고등교육국(Direction de l'enseignement supérieur), 교육·과외활동국(Direction de l'action éducative et périscolaire), 중등교육국(Direction des établissements du second degré), 초등교육국(Direction des écoles), 일반행정 및 학교교육예산국(Direction de l'administration générale et de la prévision sociale)이 있다.

2. 행정 전달 체계

가. 유아교육

만 3~5세 유아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랑스 유아교육은 중앙집권식 행정체계를 통한 공교육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담당하는 주무부서는 교육부이다. 1982년부터 지방분권화 정책으로 중앙정부의 관할 하에 있던 업무와 기능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었으며 다른 행정부서와도 상호 협조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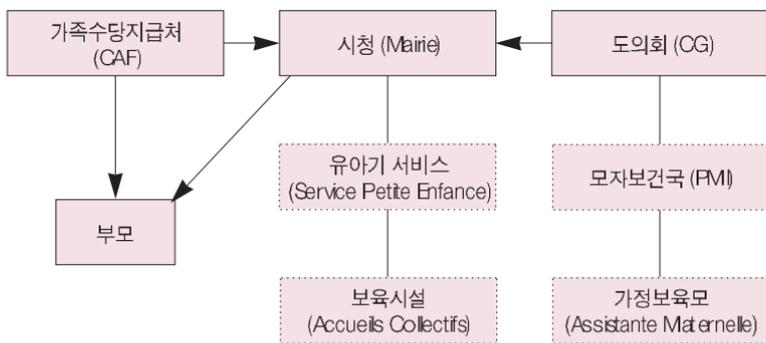
프랑스 교육부에서는 교원선발, 교육, 자격관리와 같은 인사업무와 교원 급여, 교육과정 및 유아학교 운영 및 기능에 대한 법령을 제정 공포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부속 기관인 교육감독부(IGEN)와 교육행정·연구감독부(IGAENR)에서는 교육실행 전반에 걸친 감독과 평가의 기능을 수행한다. 그 외에도 교육심의회(HCE), 교육고등심의회(CSE)등과 같은 자문기구와의 협조적 관리를 통해 유아교육의 질적 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다음은 프랑스 교육부의 행정조직도이다.



[그림 5.1] 프랑스 교육부의 행정 조직도 (MEN, 2009)

나. 보육

프랑스의 영유아 보육은 중앙정부의 노동, 사회, 가정, 연대 및 도시부(Ministère du Travail, des Relations Sociales, de la Famille, de la Solianité et de la Ville) 산하 가족부에서 담당하며, 도의회(Conseil général)와 시청, 가족수당지급처, 모자보건국에서 업무를 담당한다. 이러한 체계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 →: 지원금

[그림5.2] 프랑스 지방자치단체 보육 행정 체계 전달 체계

3. 예산 및 교육(보육)료

가. 유아교육

2009년 교육부 통계 자료(Repères et références statistiques)에 의하면, 2007년 교육비(DIE)는 125.3천만유로로 국가 총예산액(PIB)의 6.6%에 해당한다. 국가의 공교육비는 정부 외에도 여러 곳에서 분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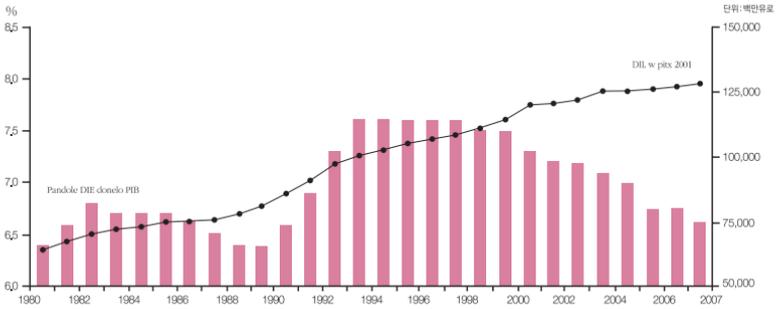
하고 있으며 거주자 한 명당 1,970유로, 학생 한 명당 7,470유로로 나타나고 있다. 1980년부터 2007년 사이 교육비는 평균 국가예산과 같은 수준(연평균 2.2%)으로 증가했으나 국내총예산액 중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다소 차이가 난다(표5.1). 교육비의 증가는 학생 수의 증가보다는 학생 당 교육비의 증가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980-2007년 사이 교육비의 평균 증가율은 2.0%에 달한다. 교육비 증액의 원인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으나 특히 중, 고등교육의 성장, 초등교육 환경의 개선, 교사의 복지 개선 등에 의한 것이다.

〈표5.1〉 국내총예산액(PB)중 교육비(DE)비율의 연도별 변화

	교육비(십억유로)	국내총예산액 중 교육비 비율(%)	교육비 성장비율(%)	국내총생산 성장비율(%)
1980	679	6.4		
1985	788	6.7	3.0	2.0
1990	904	6.6	2.8	3.2
1995	111.1	7.6	4.2	1.2
2000	121.5	7.3	1.8	2.8
2001	121.9	7.2	0.3	1.9
2002	122.9	7.2	0.8	1.0
2003	123.1	7.1	0.2	1.1
2004	123.8	7.0	0.6	2.5
2005	123.4	6.8	-0.3	1.9
2006	125.1	6.8	1.4	2.2
2007	125.3	6.6	0.2	2.2

자료: MEN-DEPP, Compte de l'Education.

[그림5.3] 교육비(DIE)와 국내총예산액(PIB) 중 교육비 비율 변화(1980-2007)



자료: MEN, Repères et références statistiques, 2009.

2007년 국가총예산액의 6.6%에 해당하는 12,530억 유로 중 중앙정부(교육부)에서 부담한 비율은 57.6%이며, 그 외는 지방자치단체(24.1%), 가정(11%), 기업(6.5%), 기타 행정부서(0.8%) 순으로 나타나,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비율이 가장 높다. 그러나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교육비의 비율을 연도별로 보면 1985년에는 65.4%, 2000년에는 61.3%, 2007년 57.6%로 최근 들어 점차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교육비의 비율은 1995년 15.1%에서 2007년 24.1%로 9% 증가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5.2>와 같다.

〈표5.2〉 기관별 교육비 부담비율(%)

	1985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교육부	58.7	54.9	55.7	55.8	55.5	55.1	54.7	54.3	54.8	53.3
타부처	6.7	6.2	5.6	5.7	5.4	5.2	5.2	5.0	4.3	4.3
국가합계	65.4	61.1	61.3	61.5	60.9	60.3	59.9	59.3	59.1	57.6
지자체	15.1	21.0	21.6	21.5	21.1	21.7	22.1	22.4	22.6	24.1
타행정부서	0.8	1.0	0.7	0.8	0.7	0.8	0.8	0.7	0.8	0.8
기업	5.6	5.4	5.4	5.4	6.4	6.2	6.2	6.4	6.5	6.5
가정	13.2	11.5	10.9	10.9	10.9	11.1	11.1	11.2	11.0	11.0
합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자료: MEN, Repères et références statistiques, 2009.

교육기관별 교육비는 중등교육(중, 고등교육)에 대한 비용이 가장 높고 초등교육(유아, 초등학교)이 그 뒤를 잇고 있다. 〈표5.3〉을 통해 볼 수 있듯이 1985-2007년 동안 모든 단계별 교육비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04년을 기준으로 교육비 지출내용을 살펴 보면 교원임금(77.3%)의 비율이 가장 높고, 시설투자(7.7%), 기타(15%)의 순서이다. 전체 교육비 예산 중 기초학습단계에 해당하는 유아교육과 초등교육에 대한 비율은 26.3%로 유아교육이 38.3%, 초등교육이 61.7%였다(이화도, Vergraud, 2006).

〈표5.3〉 교육기관별 교육비 연도별 변화(1985-2007)

(단위: 백만유로)

교육기관	1985	1995	2000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초등단계	13,927	24,345	28,629	29,559	31,088	32,004	32,450	35,664	35,923
중등단계	22,879	41,187	46,802	49,285	50,232	50,853	51,484	53,978	53,026
고등단계	7,966	15,381	17,484	18,829	19,445	20,124	20,656	22,945	23,738
평생교육	5,353	9,278	10,202	11,181	10,305	10,550	10,663	10,184	10,336
기타	604	1,087	1,777	1,937	1,984	2,036	2,262	2,298	2,313
합계	50,729	91,278	104,893	110,791	113,054	115,566	117,514	125,069	125,336

자료: MEN, Repères et références statistiques, 2009.

2007년 초등교육 단계의 학생 1인당 평균 교육비는 5,350유로로 유아학교 유아의 1인당 평균 교육비(4,970유로)보다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다. 1980년부터 2007년까지 유아학교 교육을 포함하여 초등교육 단계 학생 당 평균 교육비는 연평균 2.2%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5.4〉 유아/초등간 학생 1인당 교육비 및 교육비 총액 비교

	유아교육	초등교육
학생수	2,569,300명	4,033,000명
1인당 평균 교육비	4,970 유로	5,440 유로
교육비 총액	128억 유로	220억 유로

자료: MEN, Repères et références statistiques, 2009.

나. 보육

1994년 이후 자녀양육에 관련하여 국가가족수당지급처(CNAF)에서 지출한 기금규모를 기관별로 비교해 보면, 집단보육시설(crèches)에 지원되는 금액보다 개별보육 부문에 대한 재정지원이 크게 확대되었다. 이를 통해 보육지원이 기존의 공보육서비스 제공에서 보육비용을 국가와 개인이 분담하는 개인 보육형태로 변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Morgan, 2002; Letablier, 2003). 특히 양육수당, 가정 내 보육수당, 등록 보육모 고용지원제도 등에 대한 급여지출 규모가 확대됨으로써 프랑스 보육정책은 변화를 겪게 된다(Martin, et al., 1998).

이러한 변화는 프랑스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에서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 현상으로, 국가가 집단보육시설이나 가정 외 대리양육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역점을 두기보다 육아수당이나 대리양육자를 가정으로 배치함으로써 가정양육을 지원하는 것으로 변화하고 있다. 부모에 대한 양육수당 지원은 신자유주의적 경제 질서로의 재편과정에서 양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최소화하면서 부모의 자녀양육비용을 경감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서 채택된 것이다. 결국, 국가는 개별가정을 중심으로 부모와 유아에게 적합한 보육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보육시설 설립이나 자격 교사의 관리감독 및 이들의 적정임금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OECD, 2006). 이러한 제도는 육아지원 비용에 대한 정부의 투자 규모를 최소화한다는 측면뿐만 아니라 영유아의 학습권과 부모의 자녀 양육권과 교육권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크다.

국립 연구·평가·통계국(DREES) 연구결과에 따르면, 2007년 미취학 3세 미만 영아의 31.5%가 유료보육시설에 맡겨졌다. 가정은 아동 한 명 당 월평균 280유로를 보육시설에 보내기 위해 지출하고 등록 보육모에게 맡기는 경우에는 510유로, 가정 보육모를 고용할 경우엔 1,260유로를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격은 정부의 보조금이나 세금감면 혜택을 제외한 순수한 부모 지출 비용이다. 정부의 보조금과 세금감면을 고려하면 보육시설에 보낼 때는 유아 1인당 월평균 185유로, 가정 보육모 고용의 경우엔 635유로 정도이다. 2002년에서 2007년 사이 보육료는 영유아 보육보조금(PAJE), 국세청의 가족을 위한 세금예산액 그리고 세무보조의 재평가 덕분에 감소했다(Blanpain, 2009).

〈표5.5〉 CAF의 지출 분배 변화 (2006-2007)

단위: 천유로, %

	2006	2007	2006 비율	2007비율	2006-2007 변화율
가족 재정보조	391,232	380,489	10.9	10.2	-2.7
파트너 보조	2,777,465	2,934,452	77.5	78.6	5.7
CAF 서비스	416,467	418,347	11.6	11.2	0.5
합계	3,585,164	3,733,288	100.0	100.0	4.1

자료: CAF, 2008

〈표5.6〉 CAF 영유아 보육비 변화

단위: 천유로, %

	2006	2007	2007비율	2006-2007 변화율
영유아보육	1,874,214	1,933,674	51.8	3.2

자료: CNAF-DSEI, 2008.

2005년 3세 미만 영아의 보육비는 국립가족수당지급처(CNAF)에서 60%, 지방자치단체에서 27%, 중앙정부에서 13%를 분담한다. 또한 2007년 가족수당지급처(Caf)의 사회활동 비용은 2006년보다 4.1% 증가한 37억3천유로로 사회활동비용의 반 이상에 해당하는 51.8%가 영유아 보육에 관련되었다. 2006년과 비교해 3.2%가 증가한 수치이다(표5.5/5.6 참조). 2010년까지 점진적으로 영유아 보육 시설을 늘리기로 계획한 만큼 앞으로의 가족수당지급처의 보육지원 예산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프랑스 유아교육 · 보육 서비스의 질 관리 및 협력

1. 서비스 관리 기관

가. 유아교육

프랑스 유아교육의 질 관리 체제는 교육부가 주관하고 있는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국가 교육과정 심의 위원회(CNP: Conseil Nationale de Programme)와 국가교육 고등심의회(Conseil supérieur de l'Education nationale), 교육과정 관련자료 개발과 보급을 담당하는 국립 교수-학습자료 지원센터(CNDP: Centre nationale de documentation pédagogique)가 있다. 교사교육의 질 관리를 담당하는 교원양성전문기관(IUFM)에서는 현직교사의 보수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교육의 질 관리 부처로는 교육부 산하 총괄장학국(Inspection generale)이 있다. 총괄장학국은 국가교육감독부(IGEN)와 국가교육행정 및 연구감독부

(IGAENR)로 나뉘어진다.

○ 국가교육감독부(IGEN)

1802년에 설치된 국가교육감독부는 주로 교육 유형, 교육 내용, 교육 프로그램, 교수법, 교육 실행 및 적용방법에 대한 평가를 담당한다. 총괄장학국은 교원 채용, 재교육, 교원 활동을 평가하며, 지역 아카데미와 교육적 역량을 갖춘 장학단체와 협력한다. 교육부 장관에게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며 필요한 제안을 한다.

국가교육감독부의 총괄업무는 유아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고등학교, 전문 직업교육기관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고등교육기관(Enseignement supérieur)을 제외한 교육부의 감독을 받는 모든 교사들과 조직들을 담당한다.

국가교육감독부는 159명의 장학사들로 구성되며 총괄장학국장의 지휘 아래 활동한다. 또한 14개의 전문적 상임그룹(1개의 초등교육 그룹, 1개의 학교 생활과 교육기관그룹, 12개의 중등단계의 교과목 전체를 대표하는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간 활동이 끝난 후 교육부 장관에게 연차보고서를 제출한다(MEN, 2009).

유아교육을 담당하는 그룹은 5개 영역에서 종합보고서를 제출하는데 수업의 실태, 교육적 접근방법, 유아의 다양성 고려, 공동생활, 평가 역할에 대한 주제로 구분된다. 주된 역할과 활동으로는 유아들의 구어능력, 지역 아카데미간의 공동 평가 모형 제작, 교사교육의 학문적 접근, 지역 장학사의 교육 계획, 교육정책의 실행 참여 등이 있다(조정신, 황성원, 2001).

○ 국가교육행정 및 연구감독부(IGAENR)

국가교육행정 및 연구감독부는 1965년에 설립된 교육부 산하 단체로 교육시스템의 기능 및 효율성 전반에 관한 의견과 제안을 하며 그에 대한 감독, 연구, 평가의 기능을 담당한다. 단체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국가 교육 행정, 재정, 회계를 포괄적으로 관리·감독하고, 교육의 국가 재정적 서비스(공기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등, 사기관: 계약기관, 조합 등) 시행에 관련된 모든 구조적 기능을 관리한다. 1989년 법에 따라 매년 교육부 공식문서(Bulletin officiel)에 명시된 연구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국가교육감독부와 마찬가지로 그 실행 보고서를 교육부 장관에게 제출한다.

국가교육행정 및 연구감독부는 교육기관의 기능적 어려움을 해결하거나 기관이 더 이상의 업무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 최종 개입을 하는 단체로 개입은 학교장, 이카데미장, 공공기관장이 교육부 장관에게 제안함으로 이루어진다.

국가교육행정 및 연구감독부는 지역에 따라 7개의 그룹으로 나뉘며 대표를 중심으로 몇 명의 고급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교육기관과 지역 이카데미를 감독하고 국가교육행정 및 연구감독부의 개입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며 매 학년 시작 전 지역 이카데미와 지역 장학사의 역할을 조사, 평가하는 업무를 담당한다(MEN, 2009).

나. 보육

보육은 중앙정부인 노동, 사회, 가정, 연대 및 도시부(Ministere du Travail, des Relations Sociales, de la Famille, de la Soliarité et de la

Ville)에서 총괄관리하고 그 재정을 담당한다. 도(département) 단위의 지방자치단체(도의회, Conseil général)에서는 보육시설 설립이나 시설 인가 및 개축 심사, 보육시설 관리·감독업무를 담당한다.

또한 모자보건국(PMI)에서도 보육시설 관리·감독 업무를 한다. 특히 보육시설의 의료서비스와 재정부분을 담당하며, 가정 보육모의 자격인증과 관리, 감독, 보수교육을 실시한다.

2. 영유아 교육과 보육, 유아교육과 초등교육의 협력 관계

가. 크레쉬와 유아학교

3세 미만 영아보육은 대부분이 개인보육 형태로 이루어진다. 2006년을 기준으로 3세 유아의 유아학교 취학률이 100%였던 것에 비해 만 2세 아동의 취학률은 24.5%였고, 2007년 3세 미만 영아의 공보육 시설 이용률은 10%, 부모가 집에서 보육하는 경우는 63%에 달한다.

1989년 법(loi d'orientation du 10 juillet 1989)에 의하여 만 2세아의 유아학교 조기취학이 교육투자우선구역(ZEP)의 유아들을 대상으로 권장되었다. 부족한 보육시설에 대한 해결방법과 보육시설과 유아학교의 연계를 위해 설립된 것이 유아학교 내의 만 2세반(TPS)과 연계반(classe passerelle)¹⁵⁾이다. 그리고 2009년 신설된 보육시설인 유아원(jardin d'éveil)도 보육기관과 유아학교 연계방법의 일환으로 볼

15) passerelle은 원래 육교, 교류, 기교의 뜻이지만 크레쉬와 유아학교를 연결하는 기교역할을 하는 교실이란 뜻으로 연계반 이라 번역함.

수 있다.

○ 연계반(classe passerelle)

연계반 설치의 법적인 근거는 1990년 9월 교육부(Ministère de l'éducation nationale)와 가족정책을 담당하던 보건사회복지부(Ministère de la solidarité, de la santé et de la protection sociale)의 합의규약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 취지는 0~5세 유아 교육의 연계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아직 그 실시정도는 미약하다.

이러한 연계반은 2000년 8월 법령(décret 2000-762)에 의해 현실화되었다. 유아학교에 조기취학한 2세반(TPS)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이 교육투자우선지역(ZEP)과 교육투자우선조직망(REP)에 설립되고 있다. 2000년에 25개 지방에 약 60여 개의 연계반이 설립되었다. 한 반에 10~15명의 만2~3세 유아로 구성되며 유아교사 1명과 보조교사 1명이 담당한다. 연계반에는 유아학교 취학 전 1~9개월 정도 머무르며 반일제(mi-temps)로 운영하는 곳이 많다.

연계반의 목적은 부모와 학교 간의 의사소통을 향상시키고, 부모의 역할기능을 수행하도록 돕는 것과 지역 간 교육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유아가 자신의 발달 리듬에 점진적으로 적응하도록 도와 유아학교로의 입학에 준비하게 하는 것이다.

○ 유아원(jardin d'éveil)

만 2~3세 유아를 위한 보육시설로 크레쉬와 유아학교의 중개 역할을 하는 혁신적 구조를 갖는다. 크레쉬에 다니기엔 크고 유아학교에

다니기엔 아직 어린 연령대에 맞는 아동의 교육, 학습활동을 통한 사회화를 제안할 수 있는 새로운 보육형태이다.

2008년 부족한 보육시설의 대안으로 알프스마리팀 지역 국회의원인 미셸 타바로(Michèle Tabarot)의 제안으로 시작되었다. 이 기관은 2001년 가족, 아동, 장애인부 대표 세골랭 루와이얄(Ségolène Royal)이 유아학교 입학을 준비하기 위해 제안했었던 만 2~3세 유아 대상의 교육적 사립유치원(jardins d'enfants éducatifs)과 같은 형태이다.

유아원은 유아의 정신 발달과 상호작용을 장려하며 자유놀이를 통해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야 한다. 놀이를 중심으로 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위해 학급당 유아수를 낮추고, 전문성을 갖춘 교사를 채용할 것을 강조한다. 또 이러한 시설은 교육적 연계성을 극대화 하기 위한 면에서 유아학교와 지리적으로도 아주 근접해야 함을 강조한다.

그리고 기관의 관리·운영을 위해 교육부, 국립가족수당지급처(CNAF),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조가 원활히 이루어져야 한다.

나. 유아학교와 초등학교

프랑스유아교육의 특징은 초등교육과의 연계성이 잘 이루어져 있다는 점이며, 연계방법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유, 초등교육의 학제 통합과 둘째, 유, 초등교사 양성체제의 통합이다.

○ 유, 초등교육의 학제 통합

1989년 법령(loi d'orientation)에 의해 프랑스 정부는 만 2세부터 11

세의 이동을 대상으로 유아학교와 초등학교의 학제를 통합했다. 3개의 주기(Cycle)로 구분되며, 각 주기는 3년 단위로 구성되어진다. 만 2~5세는 초보학습주기(cycle des apprentissages premiers), 만 5세~8세는 기초학습주기(cycle des apprentissages fondamentaux), 만 8세~11세는 심화학습주기(cycle des approfondissements)로 나누어진다(표 4.6참조).

유아학교의 마지막 학년인 5세반과 초등학교 1,2학년 반은 기초학습주기로 분류되어있다. 이러한 교육체제로 인해 1991-1992학년도에 유, 초등교사의 양성제도가 통합 되었다.

또한 유아학교는 시간표 구성(주 24시간)과 학교운영에서 초등학교와 같은 원칙을 준수한다. 유아학교 5세반(GS)의 경우에 자유놀이 보다는 초등학교 저학년의 교육과정을 따르며 특히 읽기, 쓰기를 시작함으로써 초등학교 1,2학년과 유사한 교육목적을 수행한다. 또한 유아 5세반과 초등 1,2학년 아동들의 기초학습능력을 평가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고자 교육부에서 평가도구를 개발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언어사용능력, 수학, 시간, 공간 개념, 쓰기, 신체적 발달 등을 평가한다(이화도, Vergnaud, 2006).

유아학교와 초등학교가 같은 주기로 분류됨에 따라 유, 초등교사들의 협의회를 통한 유, 초등 연계의 교육과정 개발과 교수, 학습자료의 공동 운영, 유, 초등교사 자격의 일원화와 재교육 활성화, 일원적 장학관리 체계에 의한 동일한 질적관리 시스템 등 여러 방면에서 연계성을 도모하고 있다.

○ 유, 초등교사 양성체제의 통합

1991-1992학년도 이전에는 유아교사들이 초등교사들과 함께 동일한 기관과 과정을 통해 양성되지 않았다. 앞에 설명한 바와 같이 유아교사는 바칼로레아(대학입학자격) 취득 후 고등교육기관에서 2년간의 전문 교육을 이수했을 뿐이다.

그러나 1991-1992학년도부터 유, 초등교사의 양성과정이 통합되었다. 유, 초등교사 모두 학사학위 취득 후 2년의 전문교육과정(IUFM)을 이수하므로 유아교사도 초등교사와 마찬가지로 총 5년간의 고등교육을 받으며 이는 OECD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러한 양성과정은 프랑스 유아교사의 전문성과 그 역할의 중요성을 잘 반영해주는 부분이다. 5년간의 교육을 이수하고 임용고시를 본 후 임용고시에 합격된 교사들은 유아학교나 초등학교를 선택하여 취업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통합된 유, 초등교사의 양성교육이 유아교육만의 전문성을 갖추는데 어려움이 있음이 지적되고 있다. 유아교육과 초등교육은 교육과정이나 교수법 등 개별화된 전문성이 요구되나 유, 초등교사 임용고시에서도 주로 초등교육에 비중이 맞추어져 놀이중심의 유아교육과정을 실행하기 위한 유아교사양성의 전문성 부족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프랑스 유아교육·보육 정책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

지 금까지 프랑스 유아교육 및 보육제도의 역사적 발달과 행·재정체제, 유아교육 및 보육시설, 유아교사 양성 제도 등 프랑스의 유아교육·보육 정책을 전반적으로 살펴보았다. 프랑스는 OECD국가 중에서도 유아교육 및 보육에 대한 국가 지원 체제를 가장 잘 구축하고 있는 나라 중의 하나이며, 무상 유아교육 체제 구축으로 만 3세 이상 유아 100%가 유아학교에 다니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이미 18세기에 가난하여 부모가 모두 일해야 하는 노동자 계층의 자녀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국가적 차원에서 수립하기 시작하였으며, 19세기에는 단순한 보호나 대리양육기능을 하던 보육소에 유아교육적인 기능을 강화하였고, 보육과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을 구분하여 대상 유아를 차별화하고 국가의 관리·감독 기관도 구분하였다. 20세기부터

나타난 여성해방운동의 영향으로 나타난 출산을 저하와 인구 감소현상을 막기 위하여 범국가적 차원에서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보육시설의 확충뿐만 아니라 가족 기능을 강화하고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프랑스의 유아교육 및 보육 제도가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지를 주제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3~5세 유아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무상교육 체제가 확립되어야 하겠다.

프랑스 유아교육은 의무교육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취학율이 거의 100%에 달하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다. 프랑스의 유아교육과 보육시설은 유아의 연령을 기준으로 즉, 3세 미만은 보육시설, 2세 이상은 유아학교로 이원화되어 있으며, 각 기관의 성격 및 특성이 구분되어 있다. 특히 유아학교는 초등학교와 학제적인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교사양성이나 교육과정의 측면에서도 서로 연계되어 있어 유아를 위한 교육권을 보장하고 있다. 반면 3세 미만 영아를 둔 취업모를 위해서는 크레쉬라는 집단 보육시설 이외에도 가정 보육모 제도가 잘 정립되어 있으며, 일반 부모들을 위한 자녀양육수당 제도가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육아부담을 경감시켜주고 있다.

이러한 영유아 보육 및 교육제도와 지원체계는 최근 프랑스 사회의 출산율을 증가시키는 데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프랑스에서는 인종이나 성별에 상관없이 프랑스에 거주하는 3-5세 유아라면 누구

라도 무상으로 유아학교 교육을 수혜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 있다. 바꾸어 말하면 유아학교는 프랑스 교육의 기본학제 속에 포함되어 있음으로써 3~5세 유아를 위한 보편적 교육기관으로서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연령별로 이원화된 프랑스의 유아교육 및 보육제도와는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유아교육과 보육기관을 유아의 발달에 적절한 교육 중심 기능과 취업모 자녀를 위한 대리보육이라는 주된 기능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가족 구조의 변화나 여성의 사회진출 등의 영향으로 유치원에서도 종일반을 활성화하고, 보육시설에서도 교육기능을 강화하면서 두 기관의 기능적 차이가 없어지고 있다. 단지 보육시설은 그 대상이 0~5세이던 반면 유치원은 3~5세로 대상 연령 차이만 남아있을 뿐이다. 2009년 현재 우리나라 유치원 취원율은 3세 22.92%, 4세 38.96%, 5세 50.59%에 불과하며 보육시설과 유치원에 취원한 유아를 모두 합해도 3~5세를 기준으로 79.8%에 불과하다. 이러한 경향은 OECD국가 평균 3~5세 취원율이 90%인 점을 감안할 때 매우 낮은 실태이다. 1997년 6월 교육개혁안에 유아교육의 공교육화 체제의 확립방안이 발표되었고, 그 이후 유아 공교육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나 아직도 유치원이 기본학제에 포함되지 못하고 있으며, 국가의 재정지원도 미비한 상황이다. 또한 유,초등교육의 연계성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유아교육기관이 초등교육의 준비학습 과정을 넘어 초등과정을 선행학습하고, 초등학교 1학년 과정의 교육프로그램이 이미 유치원에서 학습된 내용의 기초 수준을 다시 반복하고 있다는 점에서 학습의욕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프랑스의 유아교육제도가 모든 아동으로 하여금 동등한 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아동의 권리적 측면에서 접근했다고 한다면 현재 사교육기관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유아교육의 실정은 농·어촌 지역이나 소외계층의 경우 수도권 지역의 아동들과 비교해 많은 차이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 정부는 사교육비를 줄이고 인적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국가정책으로 만 3~5세 유아를 위한 유치원 무상교육을 검토하고 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제도를 '유아학교'로 통합하지는 방안으로, 이를 통해 정부 부처간의 갈등을 줄이고 부모의 육아부담을 경감시키면서 유아를 위한 질 높은 교육과 보육을 보장하지는 것이다(나정 외 1997; 정미라 외 2007). 현재 우리나라의 유아교육제도가 과연 교육 수혜자인 유아와 부모의 입장에서 적절한 교육 경험을 제공하고 있으며, 부모의 육아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효율적인지를 검토하고 3~5세 유아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무상 유아교육 체제를 확립해야 하겠다.

둘째, 유아교육과 보육을 담당하는 전문 인력 양성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프랑스의 유아학교 교사는 초·중등교원과 동일한 체제와 과정으로 양성되고 있으며 교사양성체계가 일원화 되어 있어 유아교사의 사회적 지위와 보수가 동일하다. 학사학위를 받은 이후 교원양성전문기관인 IUFM에서 전문교육과 실습과정을 이수한 후 국가시험을 거쳐 유아학교 교사 또는 초등학교 교사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제도와는 큰 차이가 난다. 이러한 프랑스의 유아 및 초등교사 양성제도는 자연스럽게 현장에서 유아교육과 초등교육의 실제적인 연계와 협력으로 이어진다. 이와 함께 유아학교의 만 5세반이 초등학교 1,2학년과 한 과정으로 묶어 있어 유·초 연계 교육이 실천되도록 제도적 지원이 이미 이루어졌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유·초등교사 양성체계가 분리되어 있고, 유아교육이 학제에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초등교사의 사회적 지위와 보수 면에서 대등한 관계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유치원 교사의 양성과정은 최소 2년부터 6년까지 다양하며, 보육교사의 경우에는 최소 1년부터 최대 4년까지 차이가 크다. 또한 교사들에 대한 처우도 유아교육기관의 유형, 즉 유치원과 어린이집간의 차이는 물론이고 같은 교사자격의 경우에도 공·사립 기관에 근무하는 교사 간에 차이가 난다. 이와 함께 유치원 교사의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발행하는 유치원정교사 자격증을 소지해야 하므로 4년제 대학이나 전문대학의 유아교육학과 또는 관련학과를 졸업해야 하는 반면에 보육교사의 경우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35학점만 이수하면 그 자격을 취득할 수 있어 실제적인 교사의 자질을 보장하기 어렵다. 따라서 유아교사와 초등교사 간의 양성기간이나 과정의 차이를 줄이고 유아교사의 전문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가 정비되어야 하겠다.

셋째, 유아교육과 보육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강화하고 다양한 지원체제로 유아의 학습권과 부모의 양육지원

체제를 구축해야 하겠다.

프랑스의 유아교육은 공교육체제로 국가가 교육비를 전액 부담함으로써 모든 유아들은 무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어 의무교육이 아닌에도 불구하고 만 3세 이상 유아는 유아학교에 100% 취원하고 있다. 만 2세 유아들 중 조기 교육이 필요한 소외 계층이나 이민자들의 자녀는 유아학교 취학을 보장하고 있으며, 만 3세 미만의 취업모 자녀들을 위해서는 다양한 보육시설 확충과 육아지원에 재정지원을 늘려가고 있다. 육아지원에 필요한 재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¹⁶⁾하고 있다. 유아교육은 교육부에서, 보육은 노동부 내의 가족담당부서에서 주관하며 재정지원은 가족수당제도가 큰 몫을 담당한다.

이러한 지원 정책은 여성의 사회참여를 지원해주고 그 결과 프랑스 사회의 출산율은 최근 많이 증가하였다. 반면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2005년 1.08명으로 최저수준으로 내려간 뒤 2009년 현재 1.19명으로 OECD국가 중에 최저를 기록하고 있으며, 육아 및 유아교육에 대한 대폭적인 재정지원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임신부터 출생 3개월까지 모든 유아에게 제공되는 육아수당제도와 취업모의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보육시설, 가정 보육모제도, 무상유아학교제도 등 프랑스의 다양한 육아지원 및 유아교육제도를 검토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육아지원제도를 확립해야 하겠다. 프랑스에서 최근 도입하고 있는 부모 양육수당의 강화가 양육에 대한 국가 책임과 경비를 최소화하면서 부모의 양육비용을 경감시키는 효과

16) 1982년 이후 영유아 양육지원에 필요한 재정이 지방분권법에 따라 많은 부분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었다.

를 갖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3세 미만 영아 보육지원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보육지원정책은 부모의 자녀양육권을 강화하면서 영유아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양육지원제도의 확립이야말로 출산율을 회복하기 위한 가장 빠른 지름길이 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무상 교육 및 보육제도는 유치원과 보육시설에 다니고 있는 저소득계층 유아를 위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제도로는 출산율의 회복을 기대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취업모를 위한 양육지원제도를 확충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에서 초등학교 입학 이전 3~5세 유아를 위한 학습권을 보장하면서 동시에 부모의 자녀 교육권을 강화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넷째, 유아교육 및 보육의 통합된 질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영유아기 핵심역량에 기초한 교육과정 표준을 제시함으로써 교육의 질적 수준을 보장해야 하겠다.

프랑스의 경우에는 유아교육과 보육시설의 질을 관리하는 주무부처가 다르기는 하지만 중앙 집중적 체제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비슷하다. 그러나 유아교육과 보육시설을 관장하는 정부부처가 서로 다르기는 하지만 대상 유아의 연령에 따라 구분되므로 관리 감독의 대상이나 내용의 중복이 없다. 우리나라에서는 2004년 유아교육법이 제정되고 영유아보육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유아교육 및 보육에 대한 국가의 행·재정지원이 확대되었으나 유치원은 교육과 학기기술부에서 유아교육법에 의한 학교로 규정되어 있고 어린이집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관할하고 있어 질 관리 및 지원체제의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유아교육기관에서도 종일제 프로그램의 확대로 보육기능이 강화되는 한편 보육시설에서는 질적 수준을 제고하면서 두 기관의 기능이 유사해지고 있다. 교육 및 보육의 질 관리를 위하여 유치원에서도 평가가 이루어지고 보육시설에서도 평가인증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유사한 기관에 대한 질 관리 부처나 내용이 서로 상이하여 문제로 되고 있다. 이와 같이 기능이 유사한 두 기관의 주무부처가 다른데서 오는 행·재정 지원에 혼선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보육시설과 유아교육기관을 일원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프랑스는 유아학교의 질적 수준을 관리하기 위해 우리나라와 같이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을 제정 운영하고 있으며, 유아학교 교육과정은 말하기 표현, 신체 표현, 감성과 상상력을 격려하는 표현 중심의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같이 프랑스는 교육과정 전반에 걸쳐 유아들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우리나라 유치원 교육과정에서도 표현생활 영역을 통해 창의적 표현을 강조하지만 예술적 표현에 국한되지 않고 교육과정의 전 영역과 연계된 표현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정미라, 황성원, 2003). 이와함께 프랑스 유치원 교육과정에는 평가가 상당히 중요시되고 있다. 이러한 평가는 유아기에 학습해야 할 핵심역량에 기초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시되어 있다. 유치원에서 평가 기능이 중요해진 것은 초등학교에서 나타나는 학습 곤란을 유아기부터 조기 발견하여 미연에 방지하려는 국가의 의지에서 시도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최근 OECD국가

에서 공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핵심역량에 기초한 교육실현인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영유아들의 발달 수준과 사회적 요구에 기초한 발달 시기별 핵심역량에 대한 국가수준의 표준을 설정하고 이에 기초한 교육과정 개정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교사양성교육이나 유아평가가 이와 연계된다면 유아를 위한 교육 및 보육의 질적 수준이 보장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출산문제를 개인차원이 아닌 국가차원의 문제로 간주하고, 유아의 교육과 부모의 양육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정비해야 하겠다.

프랑스에서 임신을 하면 임신부는 국가로부터 “임신을 축하합니다. 자녀를 키우는 것은 당신만의 부담이 아닙니다. 당신 옆에는 국가와 사회가 있습니다” 라는 말을 쓴 편지를 받게 된다. 이런 편지를 받은 사람들은 임신이나 자녀 양육이 주는 부담뿐 아니라, 부모가 되어야 하고, 한 생명에 대한 양육과 교육을 책임져야 한다는 새로운 사회적 역할에 대한 부담과 불안감을 어느 정도는 덜어 낼 수 있게 된다. 이런 편지는 듣기 좋은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사회에서 실천되고 있다.

프랑스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임신 3개월부터 아이가 만 3세가 될 때까지는 자녀의 임신과 출산에 대비하여 자녀 양육 수당과 혜택을 받게 된다. 결혼을 하거나 가족을 이루고 자녀를 갖게 되면서 모두 국가가 지원하는 가족지원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 지원의 정도는 부모의 소득 정도나 자녀수에 따라 달라진다. 이는 자녀의

수가 많으면 부모 중 어느 한 사람은 일을 그만두거나 줄일 수밖에 없을 것이며, 그에 대한 보상을 사회와 국가가 해야 한다는 논리에서 나온 것이다. 이와같이 프랑스는 가정이 사회통합의 기초이며 자녀를 낳고 기르는 것은 개인이나 가족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에서 책임지고 정부가 직접 개입할 문제로 간주하고 자녀의 출산관계 및 가족형성을 범정부적으로 지원, 장려하는 정책을 장기적,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2차 세계대전 이후 프랑스 역시 심각한 출산율 하락을 겪었으나 1990년대 이후부터 다시 상승, 현재 프랑스의 출산율은 유럽 국가들의 평균 출산율을 훨씬 상회하고 있다. 특히 90년대 중반부터 가족형성을 지원하고 가족구성원들의 사회복지 및 안전망을 확보하는 일반적인 가족지원정책 차원으로 확대하여 운용해 왔다. 젊은이들의 저조한 결혼율과 동거증가추세, 이에 따른 출산기피현상으로 가족 구성자체가 위기에 처해있다고 판단하여, 90년대 이후에는 전통적인 부지원에서 가정을 전체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확대하고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전환하였다. 이와같이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겪은 프랑스가 출산장려정책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인구를 국가의 가장 주요한 자산으로 생각하고, 인적자원을 국가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한 것에서 비롯된다. 프랑스의 출산장려 및 가족 정책은 좌우파를 막론하고 역대 지도자들이 국가의 최우선과제로 추진해 왔다.

그 결과 프랑스에서 만 3세 이상의 두 자녀를 가진 여성의 취업률은 1990년 이후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만 3~5세아의 유아학교

취업율이 100%라는 사실과도 관련되어 있다. 결국 프랑스의 유아 무상교육정책은 프랑스 사회의 저출산문제를 해결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왔다. 이와같이 유아를 위한 무상교육을 실시한 것과는 별도로 취업모를 위한 다양한 형태의 양육지원제도를 구축하고 있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프랑스 사회에서는 취업모를 위해 집단보육시설을 확충하는 일 이외에도 임시보육시설이나 가정 보육모제도, 육아수당 등을 확립하여 부모의 육아부담을 경감시켜주고 있다. 가정 보육모의 경우만 보더라도 보육모의 사회적 지위나 자격 인증에 대한 사항, 보수체계 및 처우를 법령으로 구체적이고 체계화함으로써 이러한 제도의 정착을 도와주고 있다. 게다가 가족지원정책이 행·재정적으로 가정 보육모 제도를 지원함으로써 가정 보육모가 부모의 자녀양육에 대한 파트너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점을 볼 때 프랑스 사회의 영유아 보육 제도가 비교적 단단한 기반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모의 측면에서도 육아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부모나 영유아의 특성이나 요구에 따라 기관중심 뿐만 아니라 가정 중심 형태의 다양한 자녀양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통해 우리나라에서도 인적자원 개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출산을 저하의 원인을 다각적으로 검토함으로써 부모와 가정 친화적인 양육지원 제도를 다양하게 구축할 필요가 있겠다.

• 참고문헌

- 나정, 김효겸, 박재윤, 장영희, 정미라(1997). 유아교육의 공교육체제 확립방안연구. 수탁연구 CR 97-62. 한국교육개발원
- 박은혜, 김명순, 신동주, 정미라(2000). 세계의 유아교육제도. 서울 : 양서원
- 송승민(2006). 프랑스와 한국의 보육 체계 비교: 보육 정책과 보육료 지원을 중심으로. EU학 연구, 11(1), 3-27.
- 신윤정(2009). 프랑스 저출산 정책의 주요 현황-가족 지원 정책을 중심으로, 보건복지포럼.
- 양옥승 외(1998). 세계의 보육제도. 서울: 양서원.
- 유희정, 김은설, 유은영(2006). 육아지원기관의 공공성 제고 방안 연구, 육아정책개발센터 연구보고서.
- 이화도(2006). 공교육으로서의 프랑스 유아교육제도의 이해, 유아교육연구, 10(1), 189-206.
- 이화도(2006). 유아교육 학제개편 방향성 정립을 위한 프랑스 유아교육제도 이해. 유아교육연구, 26(4), 5-29.
- 이화도, Vergnaud, G. (2006). 유아교육 학제 개편 방향성 정립을 위한 프랑스 유아교육제도 이해, 유아교육연구, 26(4), 5-29.
- 이화도(2007). 프랑스 유아교육 및 보육 행정체계 연구, 유아교육연구, 27(5), 5-31.
- 이화도, 원수현(2007). 프랑스 유아교사 및 영.유아 보육교사 양성 체계 연구, 유아교육연구, 27(5), 33-62.

-
- 정미라(1992). 프랑스 유아교육기관 발달에 관한 연구.
경원대학교 논문집, 255-276.
- 정미라(1999). 프랑스 유아교육의 발달 및 현황.
한국영유아보육학 연구, 18, 151-173.
- 정미라, 황성원(2003). 프랑스 유치원 교육과정의 비교교육학적
논의-국가수준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열린유아교육연구, 8(3),
353-375.
- 정미라, 나정, 박은혜, 하봉운(2007). 유아교육발전 5개년 계획(안)
연구. 경기도 교육청
- 조정신·황성원(1998). 프랑스의 3세 이하 보육시설 크레쉬에 관한
역사적 고찰. 열린유아교육연구, 3(1), 269-288.
- 조정신, 황성원(2001). 공교육개념으로 접근하는 프랑스 유아교육의
질 관리 체제 연구, 유아교육연구, 21(4), 103-126
- 한지혜(2002). 프랑스 유아교육제도의 이해 - 영아보육에서 유아학교
까지 -. 교육이론과 실천, 12(2), 121-145.
- 한지혜(2002). 프랑스 유아초등교사교육제도: 국가교사양성기관
(IUFM)을 중심으로, 유아교육연구, 22(2), 289-312.
- 한지혜(2003). 프랑스의 영유아 보호 및 교육체제-체제의 특징과
유아교육을 위한 시사점을 중심으로, 열린 유아교육연구, 8(3),
pp. 377-406.
- 홍승아(2005). 복지국가 재편과 젠더. 한국여성개발원.
- 황성원(2002). 프랑스 영유아 보육 체제와 동향, 한국영유아보육의
공보육화 구현방안, 한국영유아보육학회 2002 추계학술대회
발표자료집, 221-246.

Amault, S.(2005), Le sous-emploi concerne 1,2 million de personnes, *INSEE PREMIERE* n°1046.

Afsa Essafi C. & Buffeteau S.(2006). L'activité féminine en France: quelles évolutions récentes, quelles tendances pour l'avenir?, *Economie et Statistique*, n°398-399.

Bailleau, G.(2009). *L'offre d'accueil collectif des enfants de moins de 6 ans en 2007*: Enquete annuelle aupres des services de PMI, DREES, n° 135.

Blanpain, N.(2009). Les dépenses pour la garde des jeunes enfants: Crèche et assistante maternelle: un coût proche pour les familles après allocations et aides fiscales, *études et resultats* n° 695, Drees.

BO(2008). *Hors-Série N°3 du 19 juin 2008*: programme de l'école maternelle.

Borrel, C.(2006). *Enquêtes annuelles de recensement 2004 et 2005: Près de 5 millions d'immigrés à la mi-2004*, Aout 2006-n°1098, INSEE.

Brogère, G.(2002). L'exception française: L'école maternelle face à la diversité des formes préscolaires, *Les dossiers des sciences de l'éducation*, n°7.

Caille, J.-P. & Rosenwald, F.(2006). *Les inégalités à l'école élémentaire: construction et évolution*, in *Insee, France, portrait social*, La Documentation française.

Caf (2009). Vos prestations 2009.

Cnaf(2008). *Ventilation fonctionnelle des dépenses d'action*

-
- sociales*, exercice 2007, DSER.
- CNAR(2009). *Fiches pratiques Petite enfance : L'offre d'accueil collectif des enfants des enfants de moins de six ans*.
- Dajes, F.(1983). *Naissance et institutionalisation des salles d'asile et de la première enfance*, Thèse 3e cycle, Paris VIII.
- Dajes, F.(1994). *Les origines de l'école maternelle*, paris Puf.
- Deschaux, J. & Dessus, P.(2009). *L'école maternelle en France*, Document SAPEA, IUFM de Grenoble.
- DEPP(2006). *Repère et références statistiques*.
- DGTPE(2007). *Perspectives économiques 2007-2008*.
- DREES(2007). *Enquête : Modes de garde et d'accueil des jeunes enfants*.
- Escande, M.T.(2008). En 2007, l'accueil de la petite enfance représente plus de la moitié des dépenses d'action sociale des CAF, n° 75, L'e-ssentiel.
- Fagnani, J.(2003). Supporting Working Parents in France: Is Family Policy at a Turning Point?, *Journal of Population and Social Security(Population)* 1(1)
- Golse, B. & Brisset, C.(2006). *L'école a 2ans, est-ce bon pour l'enfant?*, Paris, Ed. Odile Jacob.
- Héran F. & Pison G.(2007). Deux enfants par femme dans la France de 2006: la faute aux immigrées?, *Population & Société*, mars 2007 - n° 432, INED.

Insee(2005), France, portrait social - Edition 2005.

Insee(2006), France, portrait social - Edition 2006.

Insee(2008), France, portrait social - Edition 2008.

Insee(2009), France, portrait social - Edition 2009.

Jenson, J. & Sineau, M.(2001). Comparing Childcare Programs: Commonalities Amid Variety, in J. Jenson & M. Sineau(eds.), *Who Cares?: Women's Work, Childcare, and Welfare State Redesign*

Jourdain-Menninger, D. et al.(2006). *Étude de la protection maternelle et infantile en France*, Tome I/III, IGAS.

Letablier, M-T.(2003). "Fertility and Family Policies in France" *Journal of Population and Social Security*, Supplement to Vol,1

Martin, C. A. Math and E. Renaudat(1998). "Caring for very young children and dependent elderly people in France: Towards a Commodification of social care?" in J. Lewis (ed), *Gender, Social Care and Welfare State Restructuring in Europe*. Aldershot: Ashgate, 139-174

Ministère de la Santé et des Solidarités(2008). *Accueil de la petite enfance: Guide pratique*.

Morgan, K.(2002). "Does Anyone Have a Libre Choix?: Subversive Liberalism and the Politics of French Child Care Policy". in S. Michel and R. Mahon, *Child care policy at the crossroads: Gender and welfare state restructuring*. N.Y.:Routledge, 143-167

OECD(2006). *Starting Strong II*. Paris

Mozère, I.(1992). *Le printemps des crèches, histoire et analyse d'un mouvement*, Paris, Logiques sociales, L'hamattan.

Pison, G.(2009). France 2008: pourquoi le nombre de naissances continue-t-il d'augmenter?, *Population & Société*, mars 2009-n° 454, INED.

Pla, A.(2009). Bilan démographique 2008. Plus d'enfants, de plus en plus tard, *INSEE PREMIERE*, n° 1220.

Plaisance, E.(1992). *Eveil aux savoirs*, in *Petite Enfance*, La Documentation française.

Prioux F.(2008). L'évolution démographique récente en France : l'espérance de vie progresse toujours, *Population-F*, 63(3).437-476.

Simon, M.(2001). *Ile-de-France à la page: Quatre étrangers sur dix résident en Ile-de-France, novembre 2001 - n°203*, INSEE.

Tabarot, M.(2008). *Rapport sur le développement de l'offre d'accueil de la petite enfance*, Paris, Documentation Française.

UNESCO(2007). *Note de l'UNESCO sur la politique de la petite enfance : La formation et les conditions de travail des enseignants des écoles maternelles en France*, No.37

Villain, D. & Gossot, B.(2000). *Rapport sur les dispositifs passerelles: de la famille et du lieu de garde à l'école maternelle*, IGAS-IGEN.

〈관련 인터넷 사이트〉

<http://www.archives.premier.ministre.gouv.fr>

<http://www.caf.fr>

<http://www.education.gouv.fr>

<http://www.ined.fr>

<http://www.insee.fr>

<http://www.Leparisien.fr>

<http://www.parents.fr>

<http://www.sante.gouv.fr/drees/>

<http://www.travail-solidarite.gouv.fr>

<http://vosdroits.service-public.fr>

〈신문 기사〉

Des creches ouvertes le dimanche?, Liberation, 2008/10/14.

Morano: “Nous allons creer 100 000 places de creche”, Le Journal du Dimanche, 2009/4/4

Taux record de nationalite pour la France, 2009/01/13, Le parisien, Leparisien.fr

정미라

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학령전교육전공)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유아교육) (석사)
프랑스 Caen 대학교 대학원 졸업(Ph.D)
현 경원대학교 유아교육학과 교수
한국육아지원학회 회장

조희연

프랑스 파리 5대학교 교육학과 졸업(학사)
프랑스 파리 5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박사)
현 서경대학 유아교육과 교수

안재진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졸업(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졸업(석사, 박사)
현 육아정책개발센터 부연구위원

세계육아정책동향시리즈 8

프랑스의 육아지원정책

발행인 · 조복희

발행처 · 육아정책개발센터

저자 · 정미라 · 조희연 · 안재진

발행일 · 2009년 11월

주소 · 110-734 서울시중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7층, 10층, 11층
<http://www.ki-coe.re.kr>

대표전화 · 02) 730-7070

팩스 · 02) 730-3313

인쇄 · 도서출판 한학문화 02) 313-7593(대)

ISBN 978-89-92396-44-8 93330

정가: 7,000원

